

제 II 권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 제 I 권 |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장애인등록, 생활안정 등)
- 제 II 권 |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지역사회복지, 기타 복지 사업 등)
- 제 III 권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제 IV 권 |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제 V 권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제 VI 권 |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 VII 권 | 2020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제 VIII 권 |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제 IX 권 |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제 X 권 |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제 XI 권 | 2020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
1-1. 2020년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1-3.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28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59
2-1.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61
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72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77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79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81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3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96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101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103
4-1-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122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132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151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	198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209
4-6.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211
4-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16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	219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223
5-1. 장애인차별금지법	225
5-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운영	234
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240
5-4.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281
제6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287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289



2020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01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1 2020년 주요 변경사항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운영	<p><2-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IL)>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p>	<p><2-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IL)>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p>	<p>장애인복지법 개정('19.7.1)에 따른 센터 명칭 변경</p>
	<p><2-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IL)> 가. 조 직 ○ <u>최고위원회</u> - <u>최고위원회의 구성</u>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u>최고위원 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 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u> <u>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최고위원 회의 구성 및 선출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u></p>	<p><2-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IL)> 가. 조 직 ○ <u>운영위원회</u> - <u>운영위원회의 구성</u>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u>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 대해 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 위원회의 선출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 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 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u> ● <u>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 호별 1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u> ① 센터 소장 ② 이용자대표 ③ 해당 시·군·구 소속의 담당 공무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 ④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 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p>	<p>명칭 변경 및 센터운영 투명성 강화</p>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p><2-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IL)> 나. 직원 - 직원 구성 ●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p>	<p><2-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IL)> 나. 직원 ●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p>	<p>센터 소장 전문성 강화</p>
	<p><2-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IL)> 나. 직원 - 직원구성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u>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임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2-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IL)> 나. 직원 - 직원구성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u>법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 인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총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임면 결과(연임 포함)는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 센터 운영과 관련 부정 혹은 비위사실이 있는 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p>	<p>센터 소장 임면 절차 명확화</p>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p><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가.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모·선정한 기관 (단체)</p>	<p><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가.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모·선정한 기관 (단체) ※ 5년마다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21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p>	<p>공모시기 구체화</p>
	<p><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다. 지도·감독 <신설></p>	<p><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다. 지도·감독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 위치한 시·도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은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p>	<p>사업운영 책임성 강화</p>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p><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신설></p>	<p><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라. 평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에 대해 2년마다(홀수년도)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평가 규정 신설</p>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p><4-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표> 하단 내용 신설</p>	<p><4-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년 이내(2020.1.29.)에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시행령 부칙 제3조</p>
	<p><4-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10. 행정사항 가. 교육 및 홍보 (1) 편의시설 시설주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기준 등에 대한 관련 분야 지식을 습득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적극적인 조치</p>	<p><4-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10. 행정사항 가. 교육 및 홍보 (1) 편의시설 시설주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기준 등에 대한 관련분야 지식을 습득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연락처(문의사항) : 02-3433-0736 - 교육일시 : 별도통보</p>	<p>교육 의무규정 추가</p>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p>〈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p> <p>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라. 과태료 부과 징수</p> <p>〈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 여부 판단(적용) 기준〉</p>	<p>〈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p> <p>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라. 과태료 부과 징수</p> <p>〈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 지침〉</p> <p>내용 전체 변경</p>	<p>다수 지침 추가 로 인한 내용 전체 변경 (본문확인)</p>
	<p>〈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p> <p>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라. 과태료 부과 징수</p> <p>(4) 관리</p> <p>○ 반드시 처분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조치</p> <p>- 행복e음 자동차표지부정사용자등록 시스템에서 표지 부정사용 등에 관한 위반항목을 선택하여 제재이력 관리(장애인권익지원과-8129호, 2016.11.21.)</p> <p>※ 자동차표지부정사용자등록 화면 : 장애인 복지 > 장애인서비스신청 > 서비스관리 > 자동차표지관리 > 자동차표지부정사용 관리 > 부정사용자등록 > 위반항목의 선택 버튼 클릭.</p>	<p>〈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p> <p>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라. 과태료 부과 징수</p> <p>(4) 관리</p> <p>○ 반드시 처분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조치</p> <p>- 행복e음 자동차표지부정사용자등록 시스템에서 표지 부정사용 등에 관한 위반항목을 선택하여 제재이력 관리(장애인권익지원과-8129호, 2016.11.21.)</p> <p>※ 자동차표지부정사용자등록 화면 : 장애인 복지 > 장애인서비스신청 > 서비스관리 > 자동차표지관리 > 자동차표지부정사용관리 > 부정사용자등록 > 위반항목의 선택버튼 클릭.</p> <p>-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주차 방해행위 차량 이력조회 기능 추가</p> <p>● <u>전국의 행정관청(과태료 부과)에서 위반행위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 행위 차량 이력 조회' 기능 추가</u></p> <p>● <u>불법주차관리 자동차표지(장애인·보훈) 조회 관련 기능 개선</u></p>	<p>주차방해행위 차량 이력조회 기능 추가</p>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2. 발급대상</p> <p>〈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p> <p>3. (장애인 1인법인) 하단</p>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2. 발급대상</p> <p>〈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p> <p>3. (장애인 1인법인) 하단 박스</p> <p>〈 1인 법인의 정의 〉</p> <p>○ 법인의 구성요건 : 주주 + 이사</p> <p>○ 1인법인 : 1인이 100% 주식지분을 보유한 법인</p> <p>- 주주(100%) + 이사(0%)로 구성된 법인</p> <p>-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p> <p>※ 주주겸 이사 이외에 주식 없는 이사 감사 가능</p> <p>⇒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받으면 주식현황을 통하여 확인 가능</p>	<p>장애인 1인법인 정의</p>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3. 표지의 구분</p> <p>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p> <p>(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18. 7. 27.)의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p> <p>〈하단 표〉</p>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3. 표지의 구분</p> <p>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p> <p>(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19. 6. 24.)의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p> <p>〈하단 표 전체 변경〉</p>	<p>관련 지침에 의한 내용 변경 (하단 표 전체 변경)</p>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6. 표지관리 등</p> <p>〈신설〉</p>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6. 표지관리 등</p> <p>마.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기능 개선 (다인1표지) - 1장의 표지 정보에 2명 이상의 인적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p> <p>바.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및 장애인 카드 발급 현황 - 자동차표지 신청 시 사용자가 입력하여 유효기간을 관리 - 장애인별 카드(복지·통합·할인) 발급 내역(유효카드 표시) 및 발급 유효기간, 회수·폐기 및 재발급 대상자 조회를 위한 카드 발급현황 추가</p>	<p>다인 1표지 기능 개선</p>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7. 재발급</p> <p>〈신설〉</p>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7. 재발급</p> <p>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및 교체발급이 관리하고 있는 보장기관과 관계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19.2.19 서비스 개시) - 장애인 소유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주차가능 표지는 그중 한 대만 발급 가능하고, 주차불가표지는 여러 대 발급 가능하도록 관리 확대</p>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참고자료></p> <p><신설></p>	<p><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p> <p><참고자료></p> <p><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추가</p>	<p>등급제 폐지로 인한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추가</p>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p><5-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p> <p>4. 신고의무자 범위</p> <p>○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5-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p> <p>4. 신고의무자 범위</p> <p>○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 권리보장원 및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법을 개정</p>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p> <p>7.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p> <p>다. 사례지원 체계도</p> <p>일반상담</p>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p> <p>7.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p> <p>다. 사례지원 체계도</p> <p>일반사례</p>	<p>용어 변경</p>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p> <p><신 설></p>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p> <p>7.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p> <p>라.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p> <p>○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3의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p>○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p> <p>○ 행정처분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p>	<p>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률 내용을 명시</p>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신 설〉</p>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7.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 마. 장애인학대 사건 등의 통보 ○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p>	<p>법률 개정</p>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신 설〉</p>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8.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현황, 명칭 등 나. 명칭 및 로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은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기관 이외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칭 사용 제한</p>	<p>유사명칭 사용제한</p>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 다. 자격기준 ○ 구체적인 자격 요건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365 586 709 1558"> <thead> <tr> <th>구분</th> <th>자격 요건</th> </tr> </thead> <tbody> <tr> <td>기관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td> </tr> <tr> <td>팀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td> </tr> <tr> <td>사원 (상담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td> </tr> <tr> <td>사원 (운영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td> </tr> </tbody> </table>	구분	자격 요건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원 (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원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 다. 자격기준 ○ 구체적인 자격 요건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736 586 1080 1518"> <thead> <tr> <th>구분</th> <th>자격 요건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기관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td> </tr> <tr> <td>팀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td> </tr> <tr> <td>사원 (상담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td> </tr> <tr> <td>사원 (운영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자 우대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td> </tr> </tbody> </table>	구분	자격 요건 (예시)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원 (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원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자 우대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p>자격증과 경력이 별개의 요건임을 명시, 사원의 자격 요건 예시 변경</p>
구분	자격 요건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원 (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원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구분	자격 요건 (예시)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원 (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원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자 우대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업무명	2019년	2020년	변경사유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별표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p>	<p><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별표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표 수정></p>	<p>보조비목·보조세 목 추가</p>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p><5-4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5. 입·퇴소 절차 가. 입소절차 ○ 시·도·시·군·구에서는 입소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쉼터 입소의 필요성 및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p>	<p><5-4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5. 입·퇴소 절차 가. 입소절차 ○ 시·도·시·군·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입소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쉼터 입소의 필요성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 - <u>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u></p>	<p>쉼터 입소 관리기관 및 입소절차 추가</p>
	<p><5-4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퇴소 이후 사례관리 - 시·도에서는 퇴소하는 장애인의 다른 사회복지시설 연계 또는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함</p>	<p><5-4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퇴소 이후 사례관리 - 시·도에서는 퇴소하는 장애인의 다른 사회복지시설 연계 또는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함 - <u>퇴소하는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퇴소 정보 통보</u></p>	<p>쉼터 퇴소 장애인 사후관리 (정보공유) 절차 추가</p>
	<p><5-4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6. 설치 현황</p>	<p><5-4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6. 설치 현황 <표 수정></p>	<p>쉼터 설치현황 최신 반영</p>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업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터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 ~ 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인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 ~ 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 9. 3 ~ 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자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증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 (53종 →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면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 ~ 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
(69종 →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을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 ~ 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인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 ~ 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 (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배우자·부모 명의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 (휠체어, 목발, 현자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현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트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이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이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이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영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 ~ 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 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 1 ~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품목 6개 → 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5.7.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 수급자 +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 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실시)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 → 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 →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 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 → 40~100 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 → 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 (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 :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70% → 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 → 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 : 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
(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법 신설
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4. 12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
(대통령령 제24061호)
- 2012. 9. 2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시 1개소)
- 2012. 10.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521호)(2013.4.23. 시행):
장애인학대 정의 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규정 신설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 → 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5.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시 1개소)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 → 20만원) 및 대상확대
(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시 2개소)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3109호)(2015.7.29 시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및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등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6호): 금지행위 유형 추가 및 벌칙 규정 마련,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 신설(2015.12.23.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 사후관리 규정 마련(2017.1.1. 시행)
- 2015. 9.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 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 지원)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3호)(2016.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 2016. 6. 3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심사서류 직접확보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급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017. 1. 1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위·수탁 협약(16.12.30)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급기관 변경(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등록 취소 등)(17. 8. 9 시행)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4562호)(2017.8.9. 시행): 금지행위에 노동력 착취 행위 추가 및 벌칙 신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2017. 4. 13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상지절단 1급 장애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포함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18. 3. 20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19. 7. 1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2019.7.1.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및 벌칙,
신고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 준용,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 요청 권한, 조사질문권 및 현장조사 절차, 관계기관
관련자료 제공 요청 권한 규정 신설
- 2018. 1. 3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61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일부 확대, 무대 경사로 및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 2018. 2. 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구(문) 폭 확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식탁 및 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등
- 2018. 3. 27 : 장애인연금법 개정(기초급여 25만원으로 인상)
(‘18. 9. 1 시행)
-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 7. 1 시행)
- 2019. 1. 15 : 장애인연금법 개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19. 4. 1 시행)
- 2019.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 7. 1 시행)
- 2019. 6. 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 2019. 6. 24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 7. 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019. 7. 1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및 심사)
- 2020. 3. 12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장애상태코드 신설 등)

1-3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1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구 분	계	기초	부가		
1-1.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80,000	300,000	80,000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74,760	254,76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3. 장애아동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0세~35개월: 200천원 - 36개월~86개월 미만: 100천원 	<p>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p> <p>·</p> <p>복지로 온라인신청</p>
1-4.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p>시·군·구청에 신청</p>

2 보육·교육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단가 - 종일반 : 47만 8천원/월 - 방과후 : 23만 9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7만 8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기초 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기관에 신청
2-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중증장애 대학생 우선지원 - 경증장애 대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대학별 특별지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교육지원 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 하고 활동비 지급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 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2-4. 장애인 정보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교육: 등록 장애인 방문교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교육: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방문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1:1 무료 교육(총 20회, 1일 3시간씩 주3회 실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 (☎1588-2670) 전화신청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 (www.itstudy.or.kr) 온라인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사이트 신청
2-6.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2-7.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2세~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 12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생 및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시·군·구청장이 소득,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44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8.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 시스템에 신청

3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3-2.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가입자의 산출보험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보험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4. 장애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받지 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음·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음·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음·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 -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 손잡이 : 지체·뇌병변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음·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8.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p>*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p>*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기] 참조</p>	<p><신청기관>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의료급여: 시·군·구청</p> <p>※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p>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p>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p>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자 <p>*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p>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p>
3-11.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p>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p>
3-12. 장애친화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p>*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p>※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되었으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p>	<p>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 인터넷 신청</p>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하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피로실 등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3-14.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검사 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 건강보험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의료급여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신청
3-15.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16.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6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9개소) 예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전국 6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월 810천원~6,480천원 - 특별지원급여 : 한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월 1,080천원 · 자립준비: 월 270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 월 270천원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봄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 (월 56/100/132시간 제공)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시/군/구청 신청
4-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확인필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 1인 : 150천원, 2인 : 300천원, 3인 이상 : 400천원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4-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4-9.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대상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설종류</th> <th>대상</th> <th>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가능제한(X1)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증장애인거주시설</td> <td>성인</td> <td>240점</td> </tr> <tr> <td>아동</td> <td>190점</td> </tr> <tr> <td rowspan="2">장애유형별거주시설</td> <td>성인</td> <td>120점</td> </tr> <tr> <td>아동</td> <td>110점</td> </tr> </tbody> </table> <p>※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p>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가능제한(X1)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청에 상담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가능제한(X1)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4-10.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 복지시설 명의로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 금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p>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p>
4-15.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지원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은 만족하는 장애인 면허조건1) (E,F,G,H,I)2)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2) E: 청각장애표시 및 블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p>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 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2-901-1553</p>
4-16. 장애인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면서, 독거 취약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 지원 	<p>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p>

5 일자리 용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률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인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인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및 주요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h>근로 시간</th> <th>급여</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형 (전일제) 일자리</td> <td>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 시설지원 업무 수행</td> <td>주5일 40시간</td> <td>월 보수 (1~11월) 1,795천원 (12월) 1,679천원 /월 운영비 180천원</td> </tr> <tr> <td>일반형 (시간제) 일자리</td> <td></td> <td>주 20시간</td> <td>월 보수 (1~11월) 897천원 (12월) 851천원 /월 운영비 90천원</td> </tr> <tr> <td>복지일자리</td> <td>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 사서 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3개 맞춤형 직무 수행</td> <td>월 56시간</td> <td>월 보수 481천원/ 월 운영비 20천원</td> </tr> <tr> <td>시각장애인 인마사파견</td> <td>인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시설 여건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 여가시설(경로당)에서 인마서비스 제공</td> <td>주5일 25시간</td> <td>월 보수 (1~11월) 1,145천원 (12월) 1,075천원 /월 운영비 146천원</td> </tr> <tr> <td>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td> <td>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td> <td>주5일 25시간</td> <td>월 보수 (1~11월) 1,125천원 (12월) 1,056천원/ 월 운영비 146천원</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 시설지원 업무 수행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11월) 1,795천원 (12월) 1,679천원 /월 운영비 180천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1~11월) 897천원 (12월) 851천원 /월 운영비 90천원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 사서 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3개 맞춤형 직무 수행	월 56시간	월 보수 481천원/ 월 운영비 20천원	시각장애인 인마사파견	인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시설 여건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 여가시설(경로당)에서 인마서비스 제공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1월) 1,145천원 (12월) 1,075천원 /월 운영비 146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1월) 1,125천원 (12월) 1,056천원/ 월 운영비 146천원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위 탁기관)에서 공개모집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 시설지원 업무 수행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11월) 1,795천원 (12월) 1,679천원 /월 운영비 180천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1~11월) 897천원 (12월) 851천원 /월 운영비 90천원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 사서 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3개 맞춤형 직무 수행	월 56시간	월 보수 481천원/ 월 운영비 20천원																								
시각장애인 인마사파견	인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시설 여건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 여가시설(경로당)에서 인마서비스 제공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1월) 1,145천원 (12월) 1,075천원 /월 운영비 146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1월) 1,125천원 (12월) 1,056천원/ 월 운영비 146천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921-5053)
5-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921-5053)
5-6. 장애인창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65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2개소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921-5053)
5-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행기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vr.koddi.or.kr) 참고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기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최고 3%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5-10.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5-11. 국가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응시자 * 자체규정을 만들어 개인별 시각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신청
5-12.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 검정 시험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3. 장기복무제대 군인 자녀 지정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복무 제대군이 심신장애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지원 	보훈지청에 문의
5-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직업훈련 실시기관 - 직업적응훈련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수당 직업적응훈련 월10만원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5-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백만원)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p>※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6. 장애인고용 시설 장비 유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유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유자지원사업주 결정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용승합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원 한도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용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유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 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7.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이하의 구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1단계</th> <th style="width: 33%;">2단계</th> <th style="width: 33%;">3단계</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 상담 - 장애인 직업평가 - 장애인 진단상담 프로그램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취업 알선 (직무사전 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면접)·취업 후 적응지도 등 </td> </tr> </tbody> </table>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 상담 - 장애인 직업평가 - 장애인 진단상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취업 알선 (직무사전 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면접)·취업 후 적응지도 등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 상담 - 장애인 직업평가 - 장애인 진단상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취업 알선 (직무사전 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면접)·취업 후 적응지도 등 							
5-1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수당지급 대상 :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형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p>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형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3개소)</p> <p>식비: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또는 1일 5시간 이상(월 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이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6만6천원 지급</p>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p>5-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지급단가(15~8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발생분부터) 	<table border="1" data-bbox="728 352 1101 635">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경증장애인</th> <th colspan="2">중증장애인</th> </tr> <tr> <th>남성</th> <th>여성</th> <th>남성</th> <th>여성</th> </tr> </thead> <tbody> <tr> <td>2019년 발생분까지</td> <td>30만원</td> <td>40만원</td> <td>50만원</td> <td>60만원</td> </tr> <tr> <td>2020년 발생분부터</td> <td>30만원</td> <td>45만원</td> <td>60만원</td> <td>8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급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p>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p>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p>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p>5-20. 보조공학기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58개 품목 280여개 제품) ● 지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보접근제품: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구제품: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 특수작업의자, 작업물운송운반장치 등 - 의사소통제품: 신호장치,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메모기 등 - 사무보조제품: 팔지지대, 필기보조도구, 원고홀더, 수화기홀더 등 - 개조 또는 주문제작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업무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p>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p>																			

6 공공요금 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 장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요금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8.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 기)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22)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p>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22)</p>
6-10. 항공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준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준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준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준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준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p>※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p> <p>※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p>	<p>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p>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이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6-1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신청 개시(14.12월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3. 전기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14. 도시가스 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인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사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7-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4. 소득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12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5. 장애인 의료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 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7-8. 상속세 상속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을 하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p>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p>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p>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p>
7-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p>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p>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8-1.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등록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료기관 퇴원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 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지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8-2. 주간 보호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6. 특별교통수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8-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시군구청 문의
8-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0.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영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11. 수어통역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언어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수어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농아인협회 ☎02-461 -2261~2
8-1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장애 이해외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 -3556) www.free get.net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p>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5023) www.kaidd.or.kr</p>
8-14. 편의시설 설치시민 추진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 시·도(시·군·구),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p>시·도지사</p>
8-15.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p>문의: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1021)</p>
8-1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도협회, 사군구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 방법 홍보 등 	<p>문의: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02-2289-4343)</p>

주요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8-17.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함.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0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02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1 목 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3 운영 주체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각 시·도지사에게 의해서 선정된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4 기본 방침

-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 서비스 대상
 -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자립생활 지원 목적
 - 센터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 (4) 개별 자립생활지원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해야 한다.
 - 거주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인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지원 대상

-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6 주요기능

- 센터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및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주요기능 중 기본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며, 선택은 센터 여건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구분	주요기능		주요사업(예시)
	대분류	중분류	
기본 사업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 - 인권침해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 장애인권 및 권리옹호교육 - 차별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및 구축 활동 -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장애인권익향상 네트워크 활동
	동료상담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정보제공 -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 양성 - 동료상담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 탈시설 계획 수립 및 홍보 - 탈시설 전환 간담회 및 교육 - 탈시설 관련기관 협력
자립생활체험홈(실) 운영 지원		- 체험 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 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지원 -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 문화 여가 활동 -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 응급안전서비스 - 자립 자원 발굴(후원개발 등)

※ 본 사업의 지원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인 활동보조바우처사업에 의해서만 제공 가능. 단, 별도의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7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가. 조직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선출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 호별 1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① 센터 소장

② 이용자대표

③ 해당 시·군·구 소속의 담당 공무원(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

④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서,

①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②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③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⑤ 센터 소장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⑥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나. 직원

- 직원구성

- 자립생활센터는 소장1인, 사무국장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법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 인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총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임면 결과(연임 포함)는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 운영과 관련 부정 혹은 비위사실이 있는 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 직원 보수

- 센터 소장 및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와 협의 후 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사업비 비율 및 편성의 적절성 등)

- 직원 교육

-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이념 등에 대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 공간

- 센터의 공간은 장애인이 동등한 서비스와 접근성 및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사무 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센터 여건에 따라 동료상담실은 프로그램실(교육실)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 계 획

- 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계획 내용에는 센터의 목표와 미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포함되어야 할 자료로는 이용자의 규모, 특성, 개인별 자립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등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운영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및 기타 센터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기록을 작성한다.
-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예산 편성 및 운용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하므로 관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따른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 변경 시 사전에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 회계처리기준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은 매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한다.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 국고보조금의 용도의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교부결정의 취소

- 관리주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참고 ▶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징수)

○ 재정운용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
-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의 달성 정도를 자체 평가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 시·도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센터 선정 시 지원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8 행정 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행정 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

나. 집행실적 보고

- 사업 수행 실적은 매년 반기별로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반기 보고(6월말기준)는 매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시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운영비는 반납 조치

다. 사업평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를 통한 사업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다.
- 평가 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면서 동료상담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였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개별적, 집단별 권익옹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장애인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센터 직원 간에 지속적인 동료지원 및 동료상담 등이 수행되고 있는가?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계획은 적정한가?
 - 자립생활센터로서 미션과 목적은 적합한가?
 - 각 사업의 목표는 분명한가?
 - 각 사업의 근거(구체적인 문제나 욕구 등)는 잘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 내용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해결할 만한가?
 -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평가 지표(예시)
 - 센터 이용자(실인원)의 증가율
 -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거주시설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한 이용자의 모범사례 및 지원 건수

-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의 비율
- 권익옹호 활동에 참가한 직원 및 이용자의 비율
- 개별 권익옹호 지원 건수 및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건수
-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건수
-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교육 비율

[별지 서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 잔액
	계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	계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									

※ 활동보조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및 집행액은 제외

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복리후생비 포함)

사업비 : 권익옹호, 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등 기본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

간접비 :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임대료,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총액

2. 사업실적

구분	주요기능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내용)	이용자 실인원 (명)	제공된 서비스 건수(건)
	대분류	중분류				
기본 사업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				
	동료상담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또는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이동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 등				

※ 기본과 선택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개별 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을 세부사업명에 포함하여 실적 작성

※ 추진실적 내용은 추진일시(기간), 참석인원, 사업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1 목 적

-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환경개선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일상의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점자악보 제작·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모·선정한 기관(단체)
※ 5년마다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21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

나. 사업기간 : 2020년 01월~12월

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중도시각장애인 발굴
- 중도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및 재활정보 제공
-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훈련 알선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연구 등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등 상담사업
-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파견 등 파견사업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회복귀훈련, 일상홈 운영,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시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점자악보 제작하고,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3 사업비 지원내역(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465백만원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914백만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394백만원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97백만원

4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운영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이다.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 위치한 시·도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은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

라. 평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에 대해 2년(홀수년도)마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0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1 목 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

나.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

다.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 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함.

3 사업추진체계



4 예 산

-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등)을 추가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교육비, 홍보비 등
-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 반일(4시간) : 2만5천원, 1일(8시간) : 5만원
 - ※ 동 기준에 의하되,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5 행정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 지도·감독
 - 각 시·군·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 목 적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프치료비
 - ※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 ※ 매프(mapping) : 환자가 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 (2005.1.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사후관리 : 시술 후 최소 2년간 언어·청능 재활훈련 실시로 수술효과 극대화

4 사업추진 절차

【수술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이 생활중인 시설의 시설장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수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 검사절차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따름
 - 시설 입소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인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 검사 소요비용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은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재가 청각장애인은 자부담
- 검사병원 → 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 가능확인서를 시설장(수술대상자)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에게
통보
 - 본 사업시행 전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

【수술결정 및 수술】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시·군·구 → 시·도
 -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 시·도에 신청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재배정

- 시·군·구 → 시설장 및 수술병원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술병원**에 직접 지급
 -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수술전에 수술 병원에 지급될 수 있음

【수술후 사후관리】

- 시설장은 수술 받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시설내 재활관리 담당자 및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재가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수술 받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언어치료센터와 시·군·구 및 시·도는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

5 기타 행정사항

- 수술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 관련정보를 시설 및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별지 제1호 서식】(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이동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 명		연 락 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p>1. 수술적격 여부 :</p> <p>2. 보건복지부 고시 2018-254호('19.1.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p>		
<p>위 어린이의 수술 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소속 :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 ○○○ (인)</p> <p>○○○ 시설장(보호자 ○○○ 귀하)</p>			

※ 동 서식은 예시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가능

【별지 제2호 서식】(시·군·구 및 시설, 재가보호자 공통용)

인공달팽이관시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_____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18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또는 재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 (인)

1. 보조사업자(시설, 보호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장애인 현황	
			정원	현원

2. 보조사업 계획

○ 인공와우 수술대상자 현황

시 설 명 (보호자명)	아동성명	장애종류	등 급	성 별	연 령

○ 사업비(수술비용)

(단위 : 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합 계	아동성명	계	시 비 보조금	구비	자부담

첨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개인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

1. 수술 계획

아 동 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담당의사)		수술일자	

2. 수술후 재활훈련 계획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설내 재활 훈련 계획	*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등 기재
병원내 언어 치료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 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회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외에 기타 시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 언어치료실, 종합 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 수술후 재활훈련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술 경험이 많은 울산 메아리복지회등에 문의

【별지 제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보호자 공통

인공달팽이관 시술 지원사업 실적보고

- 법인명 :
- 시설명(또는 보호자명) :
- 예산집행 상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지방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수술실적 및 수술후 재활관리 실적

이동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연락처	
수술병원		수술일자	
시설내 재활훈련 실적		병원내 언어치료센터 치료실적	
기타 재활훈련 실적			

<참고자료 1>

인공와우의 급여기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4호, '19.1.1.시행)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기준
인공와우 급여기준	<p>1.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p> <p>가. 급여대상</p> <p>1) 1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p> <p>2)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p> <p>3) 19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p> <p>4) 상기 1), 2), 3)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p> <p>5)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4) 각 해당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함. 다만, 아래의 가), 나)의 경우 순음청력 검사 및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p> <p>- 아 래 -</p> <p>가) 요양급여적용일(2005.1.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나)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다)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p> <p>나. 급여개수</p> <p>1)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 외부장치)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되,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1개를 추가 요양급여함.</p>

제 목	세부인정기준
	<p>2) 상기 가.5)의 19세 미만에서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2set(내부장치, 외부장치)를 요양급여하되, 이후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2개 이내에서 추가 요양급여함.</p> <p>다.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p> <p>1) 시설·장비</p> <p>가) 청각실: 방음청력검사실, 인공와우조절검사(Mapping of Speech Processor) 장비, 청각 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p> <p>나) 언어치료실: 인공와우조절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p> <p>2) 인력</p> <p>가)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1)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p> <p>(2)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p> <p>(3)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p> <p>나)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p> <p>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p> <p>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p> <p>(고시 제2018-185호, '18.11.1. 시행)</p>

〈참고자료 2〉

인공 달팽이관 관련 참고사항

□ 인공 달팽이관이란?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농(聾)이된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전달되어온 소리에너지를 내이(內耳)를 대신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체내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장치

□ 인공달팽이관의 구성과 원리

○ 구성

인공달팽이관은 크게 체외부분과 체내부분(수술시 삽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달팽이관 속으로 삽입하는 전극을 가진 체내부는 수신용 안테나와 자극기를 가지고 있고, 그 끝은 길이 17mm의 22개 백금전극으로 이어져 있다. 체외부는 음성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체내부로 전달하는 장치로 수신용 마이크, 언어합성기, 송신용 안테나 등으로 되어 있다.

○ 원리

외부의 소리를 머리에 장치하는 마이크로폰에서 받아 들여 언어 합성기에서 전기신호로 부호화된 후 귀 뒤에 부착된 안테나를 통해 피부 속에 심어준 체내부(수용/자극기)에 보내진다. 와우관내로 삽입된 전극을 통해 전기신호가 와우신경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다시 뇌로 전달된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 외국의 경우

호주가 앞서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3만명이 수술받았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8년이래 약 3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호주에서 개발한 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수술전 검사**

1) 각종 청력 검사

○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ABR) 등

2) 의학적 검사 : 병력청취, 이과적, 내과적 검사,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

3) CT 촬영(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4) MRI 촬영(자기공명 영상촬영)

5) 말, 언어평가

① 말 평가 : 조음기관 검사, 음성검사, 발음검사, 말인지 검사

② 언어평가 : 어휘력 검사, 구문, 구조에 관한 검사, 언어샘플 분석검사

6) 와우감각 전기자극 검사(PST)

7) 전기자극 뇌간유발반응검사(EBAR)

8) 정신심리적 검사 및 기타 아동의 특성에 따른 검사

□ **수술후 재활치료 및 청능훈련**

아동의 청능훈련 기간이 몇살인 경우 몇 년이 걸린다는 식으로 단정짓기가 어려우며 또한 단정지을 수 없는데 이는 아동의 이해력과 인지력이 청능훈련에 영향을 끼치며, 유·소아의 경우 주변의 협력정도와 수술 후 교육기관의 재활훈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므로 보호자와 병원 및 언어치료실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기대효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 장애진단 및 수술을 통해 정상인으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수술 후 결과**

수술 받은 아동 중 6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한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분석해보면, 수술전에는 대부분 청력이 100dB 이상이고,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어음 인지력이 25% 미만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15dB-30dB로 청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환경음의 인지력도 90% 이상으로 나타났음.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2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 산하지부 (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 센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체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함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상담일지 등은 상시 기록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지적장애일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 등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센터요원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4 지원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기타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경우 일반 개인 등으로 함

5 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 : 자립생활기술·사회활동·의사소통 지원, 직업활동 및 연계
- 권익옹호 : 성폭력 예방, 자기권리주장 활동, 자조집단(모임) 운영, 서포터 양성 및 활동, 인식개선
- 상담 및 정보제공 : 부모가족상담 및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후견활동지원 :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후견인 활동지원, 피후견인 발굴 및 후견 신청 지원, 홍보 및 협력기관 개발, 사례제공, 정책제언
- 문화체육 활동지원 : 문화여가활동, 생활체육활동 지원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센터는 협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협회 및 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1개소 : 중앙회)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교육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
 - 센터 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또는 시도협회) 등

나. 인력

- 인력은 지역센터별로 개소당 센터장 1인과 전문요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센터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전문요원은 해당 센터장이 임명
 - 센터장은 협회 시도협회장 또는 지부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전문요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
 - 다만, 사업의 특성상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관한 부모대학 3단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육인증서를 취득한 장애인 부모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채용가능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 지부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지방비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수입 추가 가능
- 직원보수지급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실정에 맞게 지급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과 지적장애일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 준용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인적투자 지원,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사업을 하기 위함

2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3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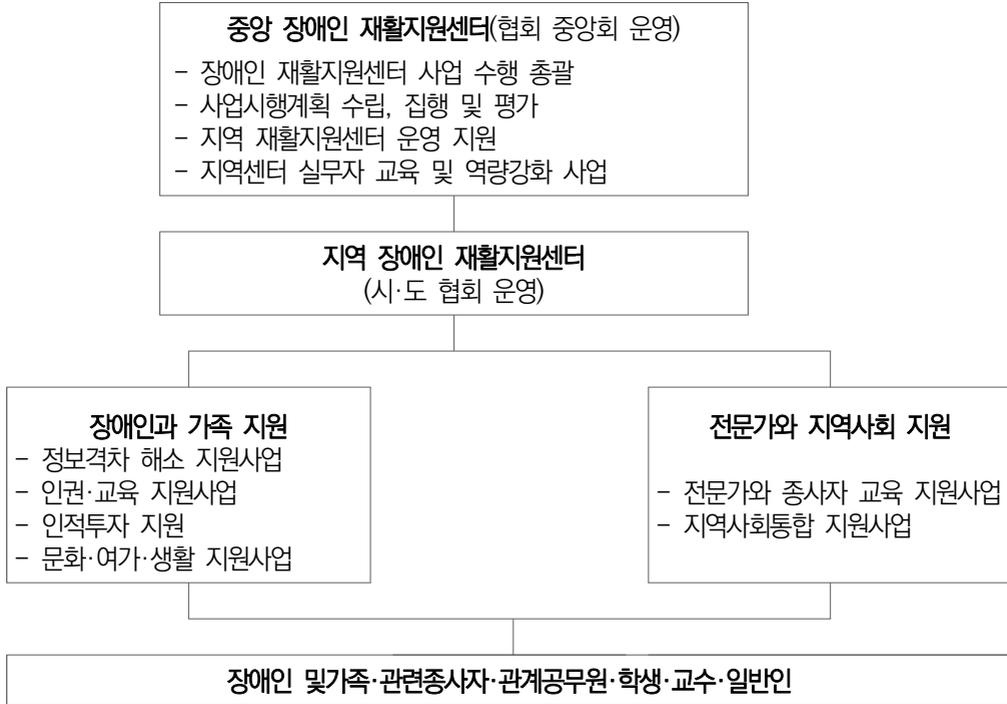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회에 ‘중앙센터’, 16개 시·도 협회에 ‘지역센터’를 둔.
- 센터는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며,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단, 동 센터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시설이 아님.

4 지원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5 운영체계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나. 사업인력 구성

- 사업인력은 지역 센터별로 개소 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센터장은 시·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인력구성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보화교육담당자의 경우 전산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
 - 일반직원의 직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5에 의거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6 사업내용

가. 장애인과 가족 지원

(1) 장애가정청소년 지원

- 꿈 투자 및 사례관리 : 학습지원, 자기주도 학습관리 및 학습지원, 맞춤형 진로직업 코칭 및 멘토링
- 민간네트워크 구축 : 공동 수행기관, 협력기관, 프로보노(재능기부자, 멘토) 개발과 활용

(2) 문화·여가·생활 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

(3) 인권·교육 지원

-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실시

(4)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정보제공 및 상담 : 장애 관련 최신정보와 전문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실시
- 장애인 IT대회 개최 : 정보검색 및 게임 등의 지역 예선, 국제대회 참가

나.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1)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2) 지역사회 통합 지원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7 운영비

- 가. 운영비는 지방비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
- 나. 센터 직원 보수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기준」에 의하여 지급

8 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



2020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04

장애인 편의증진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 편의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 (1)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 (3)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 (4)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음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1종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	300~1,000㎡
	이용원 및 미용원, 목욕장	500㎡ 이상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등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	300㎡ 이상
2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상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300㎡ 이상
	안마시술소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500㎡ 이상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등)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500㎡ 이상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300㎡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교육연구 시설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등)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1,000㎡ 이상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등)	500㎡ 이상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수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 시 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
묘지관련 시 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	
관 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	1,000㎡ 이상
	휴게소	300㎡ 이상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500㎡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	

【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예시) 】

구 분	대 상 시 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주기장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통신용시설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 (1)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 (2)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 (3) 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4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1곳 이상을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용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점자블록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가능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 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 기준을 각각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가능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설치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장애인용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점자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 하여 1개 이상 설치 ○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 설치 ○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되, 선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실로 간주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선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간주 ○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되,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

※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년 이내(2020.1.29.)에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주 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300㎡ 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500㎡ 이상)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 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1000㎡ 미만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300㎡ 이상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 이상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300㎡ 이상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500㎡ 이상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공연장의 경우 관람석 면적 500㎡ 이상)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500㎡ 이상
	전시장(500㎡ 이상), 동·수목원(300㎡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500㎡ 이상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 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1000㎡ 이상
의료 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1000㎡ 이상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전실		관람석·열람석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 집·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운 동 시 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1,000㎡ 이상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1000㎡ 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1000㎡ 이상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모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종교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화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300㎡ 이상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500㎡ 이상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면적구분을 위 표에 표기함

6 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 설치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 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가능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는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점자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 설치 가능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 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 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승강설비, 화장실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 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 사항임	

7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①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②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③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④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 편의시설 안내표시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8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3 참조)

대 상 시 설		비 치 용 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 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 전 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 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 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 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 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 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 설안내지도,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같음하여 사용 가능

※ 점자업무안내책자 수록 내용

-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민원 등 해당 시·군·구와 읍·면·동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안내
- 기타 장애인에게 안내가 필요한 업무나 중요 자료 수록 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다.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9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시정명령

- (1) 「장애인등 편의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2)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1) 부과대상 :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3) 부과금액 : 3천만원이하
- (4) 부과기준
 - (가) 편의시설 미설치 : 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 : 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 (다)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 :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 (라)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상기 해당비용의 10%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88호, 2018.8.29.)에 의함

- (5) 부과횟수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 (6) 부과·징수절차: 「행정절차법」 준용
 -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 (나)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 등을 서면으로 명시
 - (라)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 (마)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88호, 2018.8.29.)에 의함

다. 벌금의 부과·징수

- (1) 부과대상 :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부과금액 : 5백만원 이하
- (3) 부과권자 : 법원

라. 과태료 부과·징수

-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자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3) 부과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10 행정사항

가. 교육 및 홍보

- (1) 편의시설 시설주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기준 등에 대한 관련분야 지식을 습득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연락처(문의사항) : 02-3433-0736
 - 교육일시 : 별도통보
- (2) 민간교육확대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음
 - 시설주관기관은 시도, 시군구에 소재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연락처(문의사항) : 02-3433-0736

- 교육일시 : 별도통보

(3)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나.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실태조사 및 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 자료 유지관리

-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행복e음으로 관리하여 설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18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은 이후 신축(증개축, 용도변경 등 포함) 또는 2018년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확인 및 조사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

라. 기술자문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77) <<http://www.koddi.or.kr>>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02-2289-4343) <<http://www.atac.or.kr/>>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02-709-1021) <<http://www.kbufac.or.kr>>

4-1-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1 목 적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하 “기준적합성 확인”이라 함)제를 실시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기준적합성 확인 및 업무 대행의 법적근거와 시행시기

가. 기준적합성 확인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함)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의 법적근거

-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77호, 2018.12.17.)

다. 시행시기

「장애인등 편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2015.7.29.~

3 기준적합성 및 확인제 개념

가. 기준적합성(Criterion Suitability, CS)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신축) 또는「장애인등 편의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대상시설을 장애인들이 항상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장애인등 편의법」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설계와 시공)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함

나. 기준적합성 확인(Criterion Suitability Verification, CSV)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설치(신축) 또는「장애인등 편의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시설주관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선정된 대행기관이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장애인등 편의법」제8조에 의거한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Verifying)절차를 말함

4 기준적합성 확인 기관 및 대행기관

가. 기준적합성 확인 기관

○ 시설주관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주관)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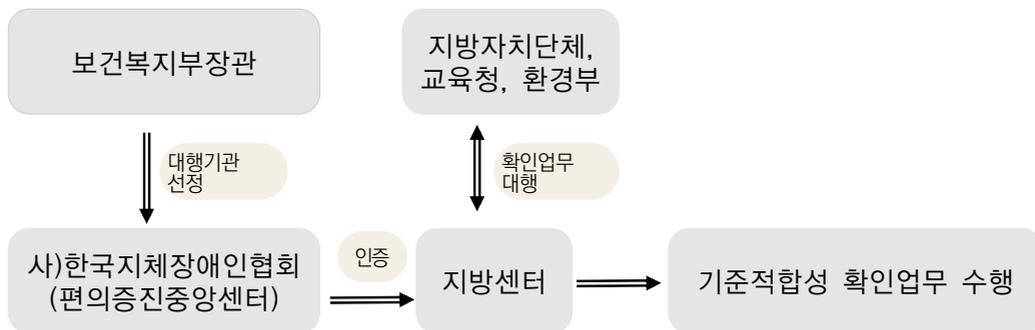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으로 명칭은 다를 수 있음, 학교시설의 경우 교육(지원)청

※ 담당부서 : 인허가 관련 업무 직접 처리부서로서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청 등

※ 학교시설의 시설주관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경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이기도 함

나.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편의증진중앙센터) 및 동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이하 “지방센터”라 함)
- 대행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다. 확인기관 및 대행기관의 주요업무 및 역할

- 허가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업무
- 사용승인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업무
- 확인업무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 확인업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장애인등 편의법」 제15조에 의한 적용의 완화승인 업무
- 확인업무에 대한 일반민원 및 관련 제반사항 처리
- 기준적합성 확인 등 편의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등 편의증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 확인자 및 관련자 대상의 확인업무에 대한 기본·보수교육
- 기타 기준적합성 확인 및 편의증진 등과 부수된 업무

5 기준적합성 확인의 종류와 그 시기

가. 허가등 확인

건축허가 신청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장애인등 편의법」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 및 제15조의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과 공원시설을 관리를 할 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및 그 변경결정에 따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동법 제19조의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할 때
-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을 위한 건축허가·건축신고 그리고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을 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 「건축법」 제29조에 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동법 제11조·제14조·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할 때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그 승인사항을 변경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 및 동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할 때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감독청의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할 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나 처분 또는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나. 사용승인등 확인

허가등을 득한 후 시공이 완료되어 건축물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등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장애인등 편의법」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자연공원법」에 제19조에 의한 해당 공원사업 또는 공원시설 관리행위가 종료되기 이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또는 관리행위가 종료되기 이전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
- 「건축법」 제29조에 의하여 공용건축물의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 이전 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기 이전
-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업이 완료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검사 등을 신청하는 때 및 동법 제66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한 학교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등을 신청하는 때

6 기준적합성 확인 대상시설과 담당부서

가. 대상시설

대상시설은 아래 열거된 시설들 중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과 동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과 동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및 동법 제2조제13호, 제14호의 부대복리시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의 학교시설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단, 상기 대상시설 중 BF인증을 신청한 시설 또는 BF인증을 득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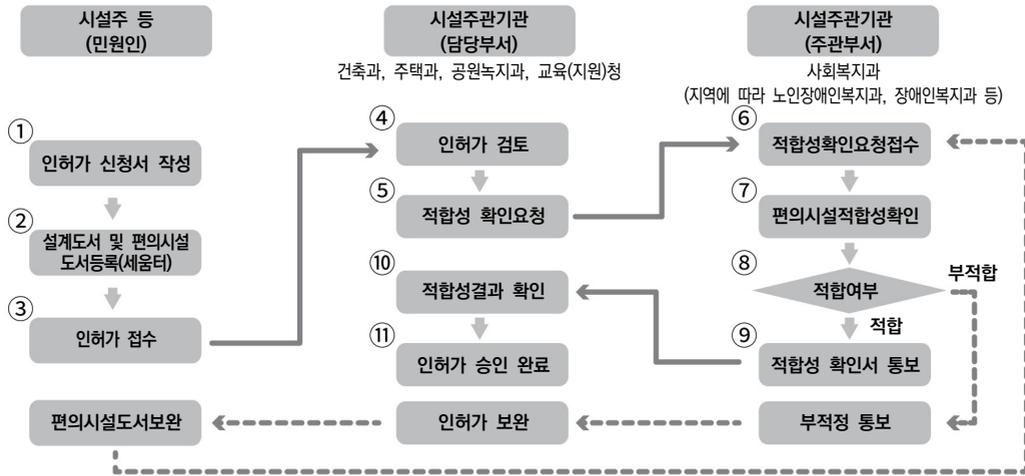
나. 대상시설별 담당부서

담당부서라 함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허가나 처분 등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

- 「자연공원법」의 대상시설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
 - 환경부장관(공원생태과), 시설주관기관의 경우에는 공원계획 및 그 변경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과 종료 또는 공원시설 관리 담당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원관리청에서 자연공원 관리 담당부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시설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
 -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 시설주관기관의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 및 그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그 종료행위 담당부서
- 「건축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시설주관기관의 건축허가와 신고 등 담당부서, 사용승인 등 담당부서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국토교통부의 공용건축물 허가준공 등 담당부서, 협의 및 통보 등 담당부서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시설주관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등 담당부서, 사용검사 등 담당부서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 해당 전기통신설비 등 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및 준공검사 등 담당하는 부서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 감독청에서 시행계획 승인 또는 신고 등 담당부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담당부서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실질적이고 최종적으로 허가나 처분등을 담당하는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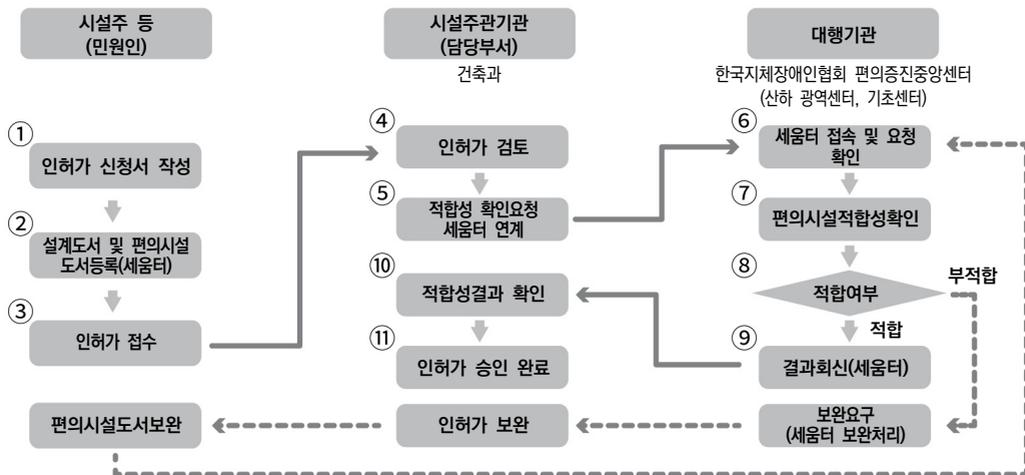
7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및 대행기관 업무절차

가. 시설주관기관 직접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



나. 대행기관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

1) 세움터 사용 시 업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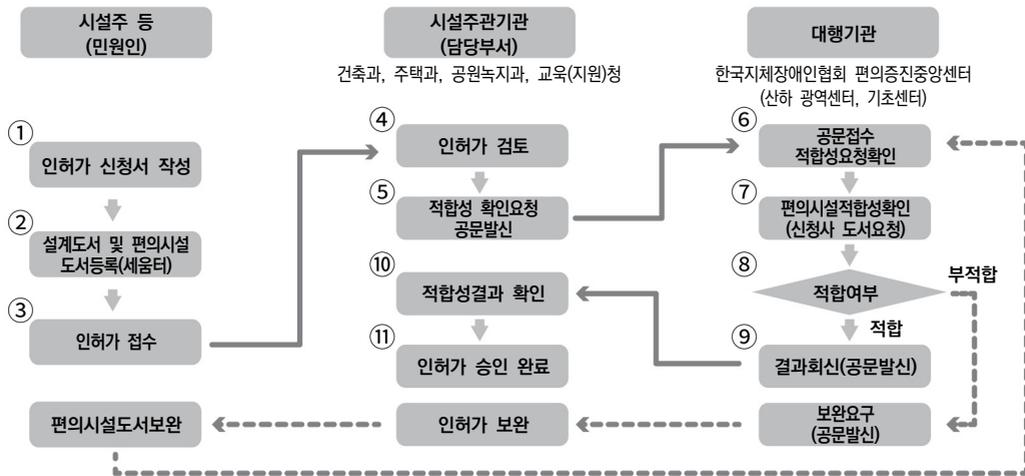


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접속(<http://www.eais.go.kr>) → 협의기관 협업시스템

나) 적합성 확인 민원 접수

- 다) 세움터상의 도서 확인을 통한 협의 또는 현장 확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라) 확인 결과가 적합인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적합 확인서 회신
- 마) 세움터 협의처리
- 바) 확인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보완요청
- 사) 세움터 보완요청

2) 세움터 미사용 시 업무절차



- 가) 인허가 민원 접수: 담당부서
- 나) 적합성 확인 요청 공문 발신: 담당부서 ⇨ 대행기관
- 다) 공문 접수: 대행기관
- 라) 민원인에 도서 요청
- 마) 적합성 확인을 위한 도서 또는 현장 확인 및 협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바) 확인 결과가 적합인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적합 확인서 회신
- 사) 확인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보완요청

8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관련 문의

가. 홈페이지 : <http://www.atac.or.kr> 또는 <http://www.kappd.or.kr>

나. 전화/팩스 : 02-2289-4343 / 02-796-4281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07236)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1 목 적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2)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등 편의법」상 대상시설이 아님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도움이 필요하신 분 : 02-1234-5678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능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신고전화번호 : 02-3456-7890
- 시설주관기관 : 시·군·구청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2-1123-4567(00시·군·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도 및 안내표시

* 보행 안전사고를 대비해 사각형 모서리는 고무패킹 또는 라운딩 처리



예 안내표지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다만, 외부에서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보다는 계도 위주 단속 필요

-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한 차량이 사진상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주차장 내의 차량 소통을 위해 잠시 진출입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시·군·구청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법」 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 (1) 「장애인등 편의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소속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통과와 협조하여 단속인력 확충

제17조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축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며, 행자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의 간단한 신고 방법 홍보

※ 축진단 등의 민간단체들은 신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단속인력으로 활용은 불가함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전 적용)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신고내용에 전면 사진 없이 뒷면만 찍혀있는 경우에는 행복·e음의 “차량번호전국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복지부 장애인권지원과-2384(2015.4.2.)호 참조)

-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방해)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방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1)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10만원

※ 외부에서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량번호 조회(행복·e음) 결과에 따라 무효표지(발급이력이 없는 경우 포함) 차량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처분을, 유효표지는 계도처분(신고 접수 사실 안내 및 정상 부착 요망)을 각각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50만원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

○ 부과기준

- 현행 법령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는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등 3종으로 구분

위 반 행 위	근 거	과 태 료
○ (부당사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등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제3항	300만원 (*영 200만원)
○ (불법주차)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 1호 제2호	20만원 (*영10만원)
○ (주차방해) ·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편의법 제27조 제2항	100만원 (*영50만원)

○ 개정연혁

- 당초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당시(1998) 불법주차 만을 규정하였으나,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표지의 부당사용을 규정(1999)하였으며

- 장애계의 지속적 요구에 의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규정(2015)

구분	1998년	1999년	2015년
장애인복지법	-	부당사용 (제35조 제3항, 1999.4.1.)	-
장애인편의법	불법주차 (제17조 제4항, 1998.4.11.)	-	주차방해 (제17조 제5항, 2015.7.29.)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계의 강력한 요구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15.7.24)하여 시행한 것이긴 하나, 법적용에 있어서 일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 존재

* 세계일보('18.11.11 -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황당과태료)

* 서울신문('18.2.21 - 침범하면 10만원, 안 침범하면 50만원 왜?)

※ 비례성 논란 사례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면 앞쪽 일부를 가로막아 이중주차 하였는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이는 아예 주차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것으로,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과도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제재의 소지 있음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의해 지금까지 단순한 장애인주차 구역 앞 이중주차 행위 등을 주차방해로 일괄단속하였으나, 향후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 적용 필요

□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 막는 등 고의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자 시행령 제9조에 주차방해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제1호 및 제3호~제5호는 고의로 장애인들의 장애인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행위이므로 '주차방해행위' 적용의 무리가 없음
- 다만 제2호(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일부 적용상 비례성 논란 등 적용상 문제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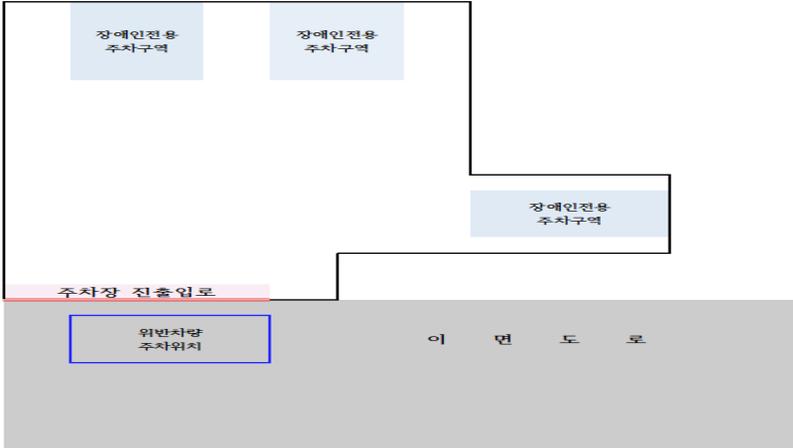
○ 제9조 제2호의 해석

-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장애인의 주차편의 저해 수준이 불법주차로 인한 행위보다 실질적·외형적으로 커야 함
- 따라서 그 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정도를 주차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차방해 행위 적용

※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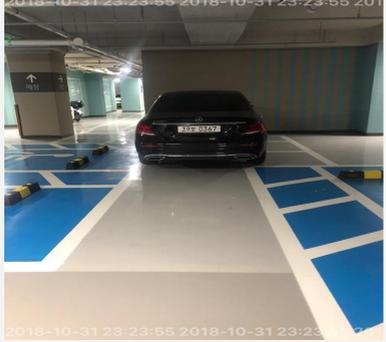
-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차량으로 인하여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물건적재의 경우 주차 및 휠체어 장애인의 하차에 방해받을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주차방해로 의율
- 위의 행위로 인해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육안 또는 정황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는 것이 타당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

구분	〈물건 등 적재(1)〉	〈물건 등 적재(2)〉
주차 방해 행위	<p>2018.11.05 14:04:17</p>  <p>☞ 50만원 과태료 부과</p>	 <p>☞ 50만원 과태료 부과</p>
	<p>〈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p>	<p>〈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p>
	 <p>☞ 50만원 과태료 부과</p>	<p>2018.01.18 16:39:56</p>  <p>☞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p>
	<p>〈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p>	
		

구 분	〈불법주차 기본형〉	〈주차구역 1면 침범(1)〉
불법 주차	 <p data-bbox="412 693 673 717">☞ 10만원 과태료 부과</p>	 <p data-bbox="828 693 1089 717">☞ 10만원 과태료 부과</p>
	<p data-bbox="486 753 724 788">〈주차구역 1면 침범(2)〉</p>	<p data-bbox="862 737 1184 802">〈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1)〉</p>
	 <p data-bbox="412 1130 673 1155">☞ 10만원 과태료 부과</p>	 <p data-bbox="828 1130 1139 1195">☞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 10만원 과태료 부과</p>
	<p data-bbox="446 1225 768 1290">〈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2)〉</p>	<p data-bbox="891 1241 1154 1276">〈구형 주차가능표지 사용〉</p>
	 <p data-bbox="412 1620 724 1685">☞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 10만원 과태료 부과</p>	 <p data-bbox="828 1620 1213 1695">☞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계도 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p>

□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

구분	<주차구역 측면에 주차>	
과 태 료 부 과 X	2018.11.28 10:55:25 	2018-11-03 05:53:44 
	<간격*을 둔 이중주차> *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	
과 태 료 부 과 X		
	<주차구역 뒤에 이중주차>	<리버콘 등 설치>
과 태 료 부 과 X	2018-10-31 23:23:5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에 문제되지 않음	 주차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차구역 밖으로 설치토록 계도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지침(2019.5.1.)〉

1. 모든 주차방해행위 및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표지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그 밖에 고의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주차하는 행위(이 행위로 인해 1면의 주차를 곤란케하는 행위는 주차위반으로, 2면 이상의 주차를 곤란케하는 행위는 주차방해로 각각 단속)

2. 계도가 필요한 경우
 -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에 해당되나, 그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제반 정황상 주차위반 또는 주차방해로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등
 - * 계도조치는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계도 사유 발생시 계속하여 가능

3. 이중주차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 기존 이중주차의 경우 “동영상” 또는 “파킹모드 확인” 등을 신고요건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아닌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도 위주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이는 타인에 의해 주차위치가 옮겨질 개연성이 있음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동영상”은 주차하는 장면을 포착하지 못할 경우 촬영의 의미가 없고, 파킹모드 여부에 의해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확인의 의미가 없음
 - 결국 기존 지침을 적용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는 그 고의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불가한 상황이 초래됨
 -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가 사진만으로 신고되었다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되 주차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위반자가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1. 현행 장애인주차구역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의 단속 기준**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장애인주차구역 규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격과 다르게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속 혼란

①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의 단속기준

⇒ 2005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은 그 후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의무가 없음.
설치의무가 없더라도 입대의 등 공식적 의사결정기구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주차구역이므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② 개인이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

⇒ 법적 의무없이 개인이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므로 단속불가
다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임

③ 현행 규정과 규격이 다른 주차구역의 단속기준

⇒ 과거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으로 그 규격이 현행기준과 다르다고 해도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임. 다만 지속적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

④ 안내표지(판)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

⇒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 다만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의 전용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불가(벽면 등에 부착되는 안내표지가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가능)

2.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

·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은 지극히 정성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장여건에 비추어 위반정도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주차선 침범기준에 한하여 규정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할 때 장애인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한개소만 설치하는 경우 선의 두께를 포함함)

따라서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서 설치된 경우,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주차구역 위반임. 다만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회 제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태료 불부과〉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내 침범	〈1회 제도〉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상 침범	〈과태료 부과〉 주차선을 넘어감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자동차의 경우, 동일장소에 하루 이상 장기간 주차시 민원인A가 오전에 신고하고 민원인B가 오후에 신고하는 등 다수의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
 -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임 ⇒ 이는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중복신고 되더라도 1회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함
 - 주차위반 후 이동하였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하였을 경우 ⇒ 이는 두 개의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1회씩 총2회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복부과 가능
 -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고지 이후에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준용하여 2시간 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4. 장애인보호자용 주차표지 단속기준

· 현재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운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 보호자용 표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다만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차장 입차 및 출차가 해당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예시1) 주차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해당 장애인이 병원에 있고 보호자 혼자 출차할 경우
 - ⇒ 해당시간에 장애인이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예시2) 위 경우에서 출차하였던 보호자가 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태우러 보호자 혼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 ⇒ 해당시간에 장애인이 병원에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아님
 - ※ 유사한 사례로 신고된 경우에도 보호자 차량의 입차 및 출차와 해당장애인 케어의 직접적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

5. 이삿짐차량 등 불가피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등에 대한 처리

· 공동주택에서 이삿짐차량이 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할 경우 등

- 위반행위의 불가피성 및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치
 - (이삿짐 차량)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 그 장소 이외에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불가(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 제출받아야 함)
 - (행사 등을 위한 점용) 행사 및 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 역시 불가피성 및 적절성 여부 등 확인 후 처리(계획서 등 확인)

6. 주거지역 주차표지 단속기준

- 현재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출차하는 경우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함. 다만 생활공간인 주거지역(공동주택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음
 - 즉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고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님
 - (예시1)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경우
⇒ 본인용/보호자용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임
 - (예시2)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보호자용 차량이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 후 주거지역으로 들어간 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 본인용/보호자용에 따라 주차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본인용 표지가 보호자용 표지보다 상위에 있지 않음) 단속 불가
 - (예시3)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 탑승 없이 출차하는 경우
⇒ 장애인주차표지 부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불가

(2)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 응급상황 등의 긴급피난이거나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 등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에 감경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4) 관 리

○ 관련 지자체 시스템(새울)으로 관리

○ 반드시 처분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조치

- 행복e음 자동차표지부정사용자등록 시스템에서 표지 부정사용 등에 관한 위반항목을 선택하여 제재이력 관리(장애인권익지원과-8129호, 2016.11.21.)

※ 자동차표지부정사용자등록 화면 : 장애인복지 > 장애인서비스신청 > 서비스관리 > 자동차표지관리 > 자동차표지부정사용관리 > 부정사용자등록 > 위반항목의 선택버튼 클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주차 방해행위 차량 이력조회 기능 추가

- 전국의 행정관청(과태료 부과)에서 위반행위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 행위 차량 이력 조회' 기능 추가

- 불법주차관리 자동차표지(장애인·보훈) 조회 관련 기능 개선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5.7.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제1호	6개월	1년	2년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제2호	경고	6개월	1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제3호	6개월	1년	2년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제4호	6개월	1년	2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팸플릿,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동영상, 리플릿, 카툰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사업의 검색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검색)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공통사항

-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포함)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시설주 등에게 협조 요청
 - ※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주관리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

(2) 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3)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 ※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되,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규약 등에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주차불편문제를 해소하도록 행정 계도(다만, 주차장법령에 따라 2~4%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설치하여야 함)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1 목 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2015.5.5부터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발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주차불가 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등의 사실혼 관계가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지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주소가 같은 주택에서의 세대분리 및 같은 아파트 단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발급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할 경우는 예외)
- 한 가구내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보행상 장애인이 있을 경우 주차가능 표지로 발급하되 주차불가 대상자 인적정보에는 주차불가 첨기), 자동차가 2대인 경우 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다.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사.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

1. (공동명의 예외 확대) 공동명의자 간의 세대(주소)분리의 경우
 - ▶ (대상) 기존에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가족간 공동명의 차량으로 주차표지를 기 발급받았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소가 분리된 경우
 - ▶ (사유확인) 장애인 단독명의 변경 또는 공동명의자간 세대(주소) 합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 ▶ (발급절차) 기존 발급절차와 동일하되, 여건 해당여부 추가 확인
 - * (본인운전용) 해당 차량의 장애인 직접 운전 여부 확인
 - 운전면허증(장애인 직접 운전), 자동차 등록증(차고지 소재지가 장애인 주소지와 동일), 자동차보험 계약서(피보험자가 장애인) 등 서류로 확인
 - * (보호자운전용) ① 해당 자동차의 공동명의자 간(장애인-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동일한 거주공간(동일 아파트단지에 동·호수만 다른 경우 등)에 거주하고 → ② 해당 공동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
 - *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병원진료, 재활치료 등을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예시1** 장애인 A는 부산에서 당초 부인/장남/본인 등 3명의 공동명의 소유의 차량을 본인운전용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인이 공동명의를 유지한 채 다른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서울로 거소를 옮겼을 경우

⇒ 기존에는 주차표지 회수의 사유에 해당하나, 주소 이전 및 명의변경 곤란의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차량의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 A임을 확인하여 주차표지 발급

※ **예시2** 장애인 B는 당초 장남과 공동명의 소유의 차량을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장남이 공동명의를 유지한 채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인 인근지역으로 거소를 옮겼을 경우

⇒ 기존에는 주차표지 회수의 사유에 해당하나, 장남이 B를 원활히 케어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 여부 및 차량의 주된 사용자가 B임을 확인하여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2. (법인명의 자동차)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

- ▶ (적용 대상 및 요건)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법인·단체가 아닌 법인 명의 자동차로 보행상 장애인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갖춘 자동차

- ▶ (발급 절차) ① 보행상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등 개조 여부 확인 → ② 해당 자동차의 주 사용자가 보행상 장애인임을 확인

* 장애인 전용차량 개조 : 족동식 핸들, 휠체어 운전석, 핸드컨트롤러 부착 등 차량으로 장애 유형에 맞게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구조 등을 적법하게 변경한 차량

※ 예시 복지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인 회사가 장애인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제공을 위하여 카니발 차량에 휠체어용 전동리프트를 설치하고 운행할 경우
⇒ 기존에는 주차표지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애인 전용차량 개조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차표지 발급

3. (장애인 1인법인)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임차리스 포함) 자동차

- ▶ (적용 대상 및 요건) 보행상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또는 장애인-법인 공동 명의) 자동차 1대를 법인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생계용과 이동 등 생활용도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가 없는 경우

- ▶ (발급 절차) ① 주차표지 발급대상 차량의 명의가 법인 명의(또는 대표자 장애인-법인 공동명의) 확인 → ② 법인 대표자인 장애인 명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장애인-가족 공동명의 자동차에 주차표지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③ 주차표지 발급

※ 예시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인 장애인이 대표자로 있는 1인법인 의류디자인 업체에서,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제품운반을 위한 업무용과 출퇴근 등 생활용도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타 주차표지 발급유무 등을 확인하고 본인운전용 주차표지 발급

〈 1인 법인의 정의 〉

- 법인의 구성요건 : 주주 + 이사
- 1인법인 : 1인이 100% 주식지분을 보유한 법인
 - 주주(100%) + 이사(0%)로 구성된 법인
 -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
- ※ 주주겸 이사 이외에 주식 없는 이사·감사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받으면 주식현황을 통하여 확인 가능

4. (장애인 전담택시) 장애인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회사법인 명의 택시

- ▶ (적용 대상 및 요건) 보행상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인 1차제로 전담하여 24시간 운행하는 법인 택시로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또는 장애인과 가족 공동 명의)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가 없는 경우
- ▶ (발급 절차) ① 법인 명의 차량이 1인 1차제로 장애인이 단독 운행 여부 확인 → ② 장애인 명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장애인-가족 공동 명의 차량에 주차표지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③ 주차표지 발급

※ **예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인 택시기사A가 B운송법인에 취업하여, 택시 1대를 전담하여 24시간 운행하는 1인1차제 택시기사인 경우 ⇒ 근무형태 및 타 주차표지 발급유무 등을 확인하고 본인운전용 주차표지 발급

5. (학원 차량 등)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지만 학원 운송수단 등록의 법정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학원장과 공동명의로 변경한 차량

- ▶ (적용 대상 및 요건) 보행상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 중 학원장의 지분이 일부 포함된 차량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또는 장애인과 가족 공동 명의)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가 없는 경우
- ▶ (발급 절차) ① 주차표지 발급대상 차량의 명의가 장애인과 학원장의 공동 명의 확인 → ② 장애인 명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장애인-가족 공동명의 자동차에 주차표지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③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2018. 5. 1. 시행)〉

1. (임차차량)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주소를 같이 하는 친족 등이 대여할 경우 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 **예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A와 동거하는 자녀B가 A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차량을 리스
⇒ 유효기간을 정하여「대여/리스차량」주차표지 발급

2. (단기대여차량)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 등의 사유로 단기적으로 대여 또는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주차표지의 발급이 불가하였으나,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 허용

※ **예시** 주차표지 발급자 장애인 A가 얼마전 당한 추돌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를 위해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하고 리스차량을 제공받은 경우
⇒ 유효기간을 정하여「대여/리스차량」주차표지 발급(기존표지는 반납보관)

3. (도서지역 임차)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주차표지의 발급이 불가하였으나,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발급 허용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등) 주민이 육지로 여행가는 경우도 포함

※ **예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보행장애인 A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렌트차량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 사전에 렌트사로부터 차량번호 및 차종 등 고유정보를 제공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주차표지 신청,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표지(「대여/리스차량」주차표지 인쇄본) 발급하되, 기존표지는 반납 필요 없음
* 렌트사로부터 차량정보 사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 예정 여부를 확인(모바일 등) 하고 해당 내용을 증빙자료로 하여 임시표지를 발급하되 시스템 표지 발급정보(행복e음)에 관련 증빙자료 등재 필요

3 표지의 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차의 명칭과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가.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1)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 본인 운전용으로 발급

※ 독거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서로 경계선에서 인접한 지역인 경우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직계존비속 포함), 친구 중 1인을 보호자(운전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 표지전면에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 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 및 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 또한, 표지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는 「대여 및 리스차량」으로, 법인격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발급하며, 차량소유주(대표자 등)의 주소지와 관련기관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 표지는 『주차가능』 표지만 발급한다.

- (2)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보호자 차량 포함)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19. 6. 24.)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의사진단서에 의한 장애인주차표지 관련 안내〉('19.8.26)

- 기존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표지 발급은, 단순히 장애의 정도만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으로 표시함에 따라 보행상 장애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한 예외적 제도임
- '19.7.1.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등록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가 별도로 판정되므로, 이에 대한 운영지침을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신규등록('19.7.1 이후) 장애인 : 진단서에 의한 발급 불가
 - '19.7.1 이후 신규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 결정서'와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이 발급되고, 후자를 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해당 여부가 표시되므로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확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만 주차표지 발급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거와 같이 별도의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표지 발급은 불가함
 - ※ 만일 이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이 주차표지 발급을 요구할 경우, 주민센터를 통한 국민연금공단의 '보행상 장애 여부' 재진단을 통해 '보행상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기존('19.6.30 이전) 등록 장애인 : 진단서를 통한 발급 가능
 - 기존 등록장애인이나 장애등급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예, 지체6급) 관련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여 합당할 경우에만 주차표지 발급
 - 진단서 적정 여부 확인(소견서는 절대 불가)

- 진단서 발급 주체 확인 :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역**이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 진단서 내용 확인 : 소견란에 해당 장애와 보행상장애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예, 하지관절6급일 경우 해당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위 장애와 무관한 다른 사유에 의한 보행상장애가 있다는 소견 또는 단순히 보행상장애가 있다는 소견은 불가)

- 주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 원칙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
(유효기간 설정없이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진단서에 의해 발급하는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임
 -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영구장애와 유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재발급할 경우 진단서 등을 새로 확인하여야 함
- 계속하여 표지발급이 필요한 경우 연금공단에 의한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 받아야 함을 반드시 안내

(2)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19. 6. 27.)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 기존의 주차불가 표지(구형 사각형)는 계속 유효함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 행 장 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 행 장 애	유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유			

4 표지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확인

- 가. 2-라, 마, 바, 사, 아에 해당하는 표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2-가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하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2-다, 자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나.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 단, 과거에 유효기간이 인쇄된 표지일 경우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등의 표지 이외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사용 가능)
-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회수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파기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재발급 제한이 된 처분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재기간 중 표지발급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 라, 마, 바, 사 및 아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가능할 경우 미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운전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함께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보행 장애 진단서)**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다, 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및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갈음한다.)
- (나)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2)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표지 관리 등

-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발급 담당공무원도 기재

-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이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표지발급 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등 발급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하고 무효인 표지를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라. 표지발급 시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확인과 차량번호 등 기재사항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기능 개선(다인1표지)

- 1장의 표지 정보에 2명 이상의 인적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바.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및 장애인 카드 발급 현황

- 자동차표지 신청 시 사용자가 입력하여 유효기간을 관리
- 장애인별 카드(복지·통합·할인)발급 내역(유효카드 표시) 및 발급 유효기간, 회수·폐기 및 재발급 대상자 조회를 위한 카드 발급현황 추가

7 재발급

- 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훼손, 분실,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및 교체발급이 관리하고 있는 보장기관과 관계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19.2.19 서비스 개시)
 - 장애인 소유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주차가능 표지는 그중 한 대만 발급가능하고, 주차불가표지는 여러 대 발급 가능하도록 관리 확대

8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제39조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적발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단, 과태료 재판에 따른 부과권한은 법원의 판단에 따름)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에 의거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며, 「형법」상 공문조 위·변조 및 동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가능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9 민원 일괄 처리

가.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관리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정보도 반드시 변경하여 자료의 불일치로 인하여 장애인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통행료를 부당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1. 항목별 기재 요령

가. 차량번호

- 1) 관할관청 기호(서울, 부산 등)와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 다 등), 차종별 분류기호(11, 12 등), 일련번호(6893)를 모두 기재한다.
- 2)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4자리에는 일련번호를 아래의 형식으로 하나씩 기재하며, 관할관청 기호와 용도별 분류기호 및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쪽에 1/2 크기로 줄여 두 줄로 기재한다.(단, 관할관청 기호가 없는 경우는 한 줄로 기재)
- 3)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투명테이프(스카치 테이프 등)로 처리하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나. 발급일자 : “○○○○년 ○월”이라고 적는다.

다. 발급기관의 장 :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을 적고 직인을 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발급번호 : 자치단체코드(7자리)-발급연도(2자리)-일련번호(5자리)를 기재한다.

※ 발급기관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기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복지시 또는 복지1동) 1234567-05-00001

바. 발급기관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지역번호까지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2-555-5555

※ 기존의 장애유형 및 등급 기재란은 폐지되었음을 유의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기재항목은 유성펜이나 유성매직(속건성 잉크 사용품)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나. 직인은 유성스탬프(비흡수면대응 불멸 속건성 잉크 사용품, 예 사찌하다 SHACHIHAT A 제품)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다. 표지의 앞, 뒷면에 부착된 코팅지는 기재내용이 건조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코팅 작업한다.

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작성 예시





주의사항

1. 자동차의 소유권, 차량등록번호 그리고 주 운전자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2. 표지에 차량번호,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기관장 직인 등이 식별가능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 표지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목지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5. 제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제외동포 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제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과 대어(리스)자동차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7. 위의 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대어·변조등 부정사용시에는 동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제한함과 동시에 관계법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을 제27조, 유료도로법 제20조 등)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직사광선, 고열 등에 장시간 노출 시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성 명 : _____

발 급 번 호 : _____

발급기관 전화번호 : _____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

A형



A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A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B형



B -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B - 2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C형



C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D형



D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2.5cm×3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등급 심사 시「국민연금법」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호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사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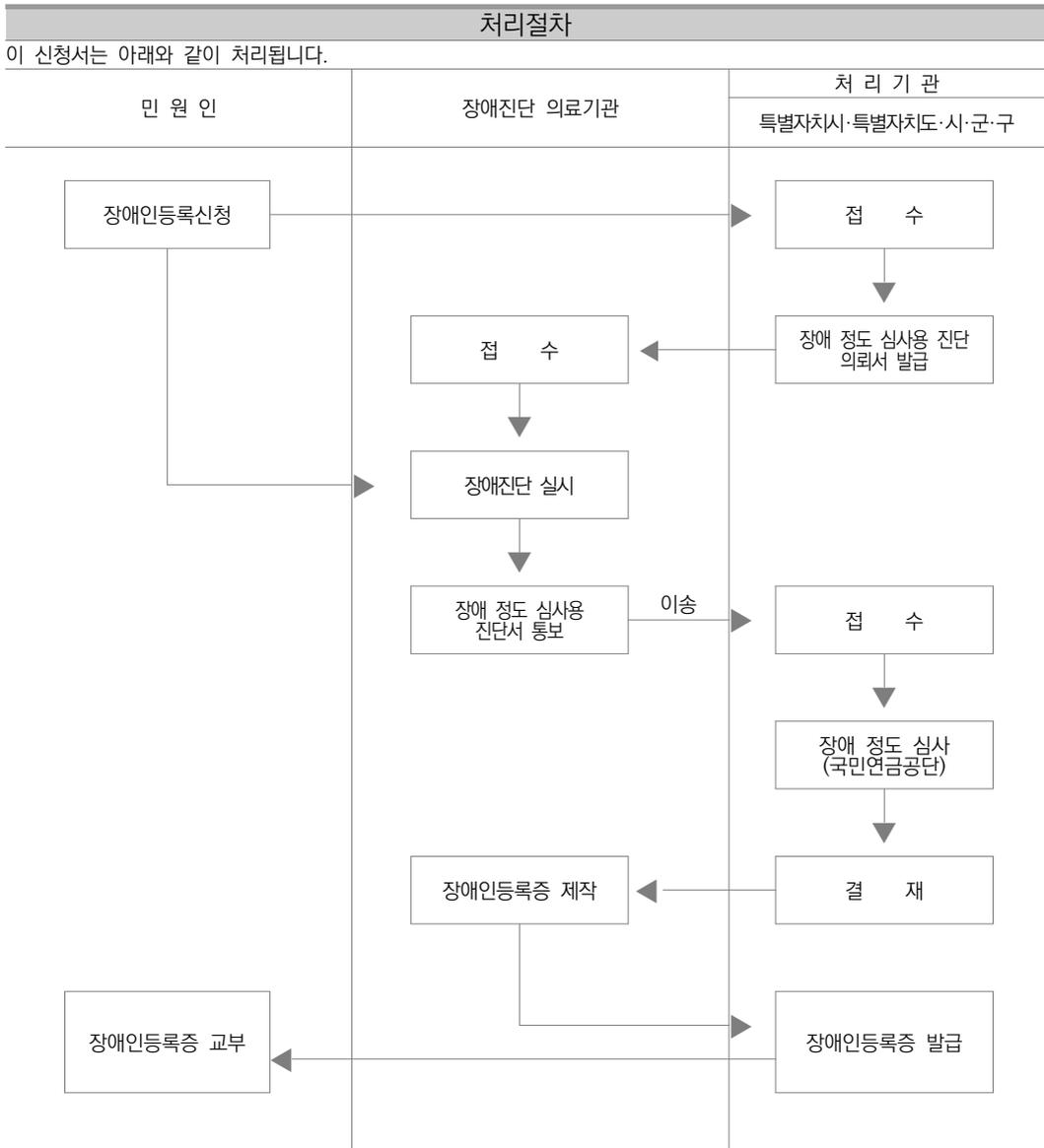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서류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V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는 등기우편료를 납부(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 제외)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자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과를 통하여 장기이식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및 등급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정도	
보호자 등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법인 단체 시설	법인·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_____)	
	종류 []장애인복지법인·단체·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_____)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신청 구분	[]신규 []재발급
재발급 사유	[]기간만료 []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기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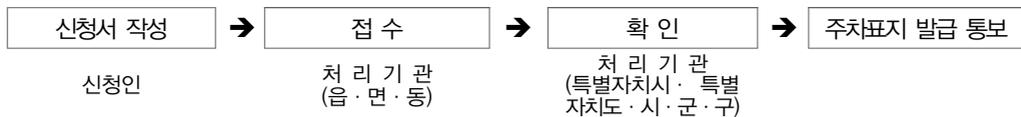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보행장애진단서			
진단대상자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주소	(☎)	
보행장애상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및 진단의사의 소견		
<p>진단대상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의료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의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p> <p>발행일 :</p> <p>의료기관명 : (인)</p> <p>의료기관 주소 : (☎)</p> <p>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인)</p> <p>전문 의 제 호</p>			
<p>※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p> <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p>			

■ 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제1호]

장 애 정 도 결 정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정도 결정일자	
시·군·구		신청유형	
장애유형	지체 장애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판정주기	년	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심사 결정내용			
중복합산 안내			
<p>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p>			
<p>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7.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15.7.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	발 급 일	장 애 인				자 동 차					운 전 자		표지 유형	발 급 자	유효 기간	비고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및 등급	주소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면허 번호	생년월일						
								성명	생년 월일	장애인과의 관계		성명						

※ 기재요령

1. 표지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9-01-0001).
2. 표지유형 : A - 장애인, B - 재외동포 및 외국인, C - 대여 및 리스차량, D - 기관용
3. 비 고 :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서식 5〉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 호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1.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92. 3. 5.)
2. 주소(소재지):
3. 추가심사결과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해당 []	미해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	미해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에 의거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20. 0. 0.

〈서식 7〉 장애정도 추가심사 안내문

장애정도 추가심사 안내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에 의거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가 함께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20. 0. 0.

〈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

1. 적용 원칙

- 가.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나.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다.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 라.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 ①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③ 두 손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 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 ②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 ③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④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⑥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⑦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용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다) 기능장애

- 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②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③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1)
- ④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⑤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라)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나. 뇌병변장애

(1) 대상 기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 시각장애

(1) 대상 기준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 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라. 청각장애 - 평형기능장애

(1) 대상 기준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마. 지적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 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바. 정신장애

(1) 대상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 ①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③ 재발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④ 조현정동장애로 제①호 내지 제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1) 대상 기준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차.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1) 대상 기준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 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장루·요루장애

(1) 대상 기준

심각한 장루·요루 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구)〉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신)〉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

1 목 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국토교통부와 공동부령 (18. 3. 28.)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3호, '18. 8. 3.)

3 개 요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

다. 주무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를 말함(업무수행은 2년간 교대로 함)

※ '19. 4. 1~'21. 3. 31까지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가 주무기관으로 업무수행

라. 인증기관

(1)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2) 인증기관의 역할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인증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무기관에 반기별로 보고

마. 인증운영위원 · 인증심사단 · 인증심의위원

(1) BF인증운영위원회

- 역할 :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구성 : 주무기관에서 10인 이내로 구성

(2) 인증심사단

- 역할 : 인증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는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서를 작성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사는 3인 이상, 지역심사는 5인 이상으로 구성

(3) 인증심의위원

- 역할 : 인증심사단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인증여부 및 그 등급을 결정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사는 5인 이상, 지역심사는 7인 이상으로 구성

바. 인증 종류

(1) 예비인증 -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함

※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2) 본인증

- 개별시설인증 중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개별시설인증 중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지역인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사. 대상시설의 범위

인증대상시설		내 용
개별시설 인증	도로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도로
	공원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여객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건축물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교통수단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지역인증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아. 인증 신청자격

- (1) 지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 (2) 개별시설인증 :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 시공자의 경우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인증 등급

- (1)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2)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3)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개별시설인증 중 건축물, 공원의 경우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증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차. 인증 의무시설

- (1) 관련근거: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2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¹⁾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본인증 시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승인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적극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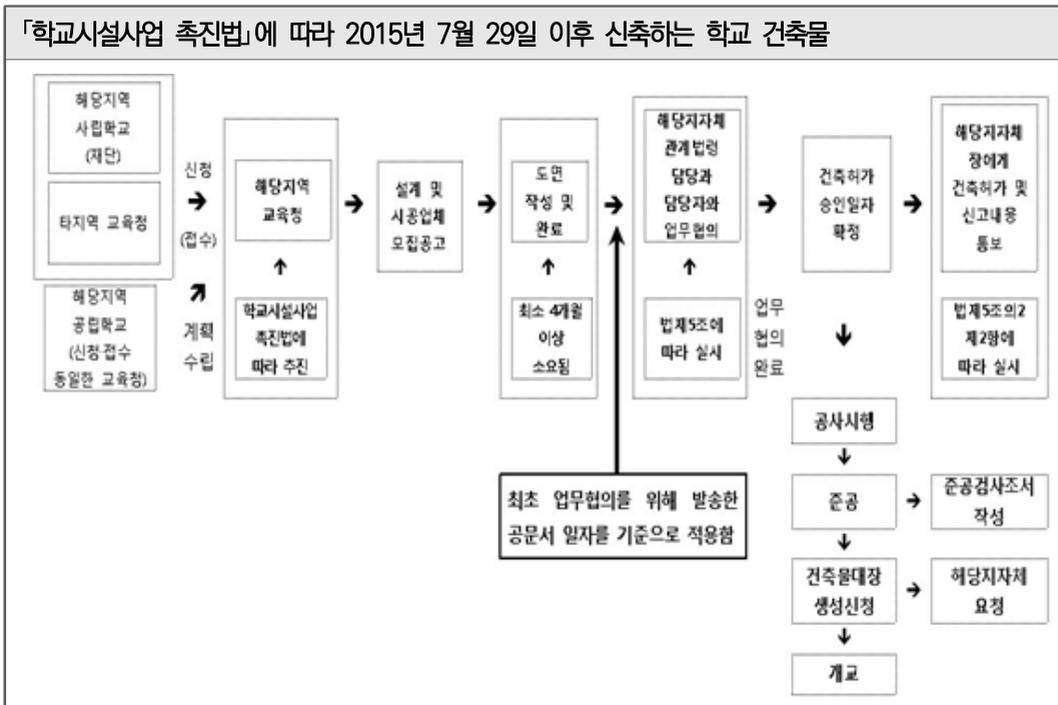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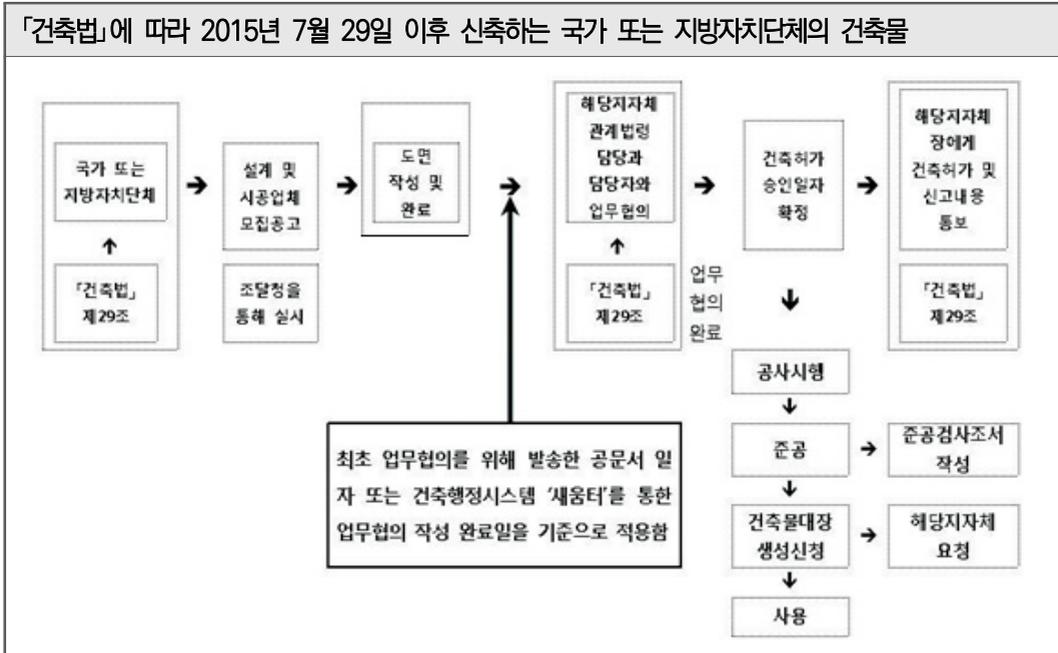
1)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대 상 시 설	
1.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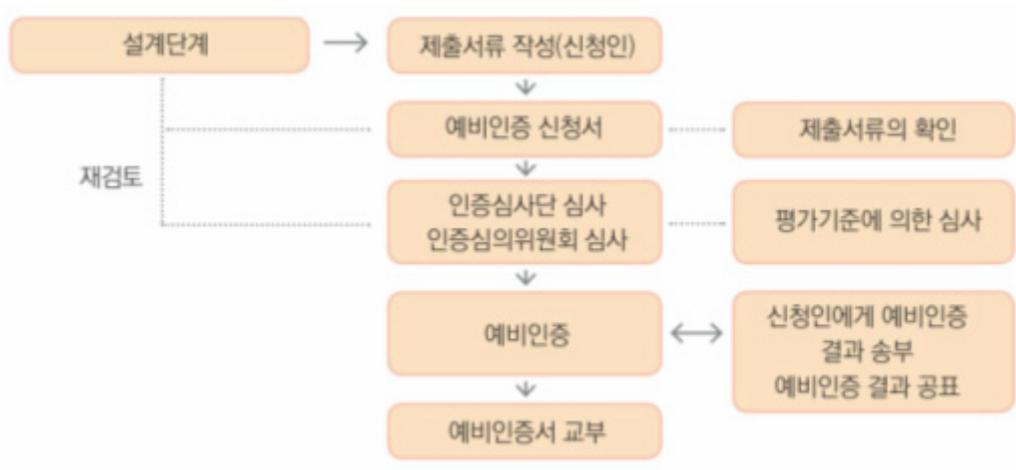
대 상 시 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적용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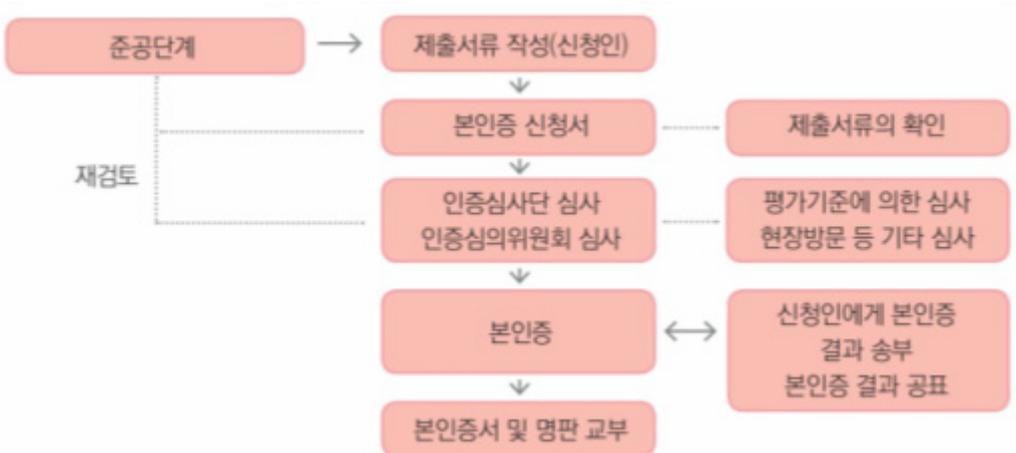


카. 인증 절차

(1) 예비인증절차



(2) 본인증절차



(3) 예비인증, 본인증 취득 소요기간

- 제출된 서류의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심사부터 취득까지 40일정도 소요(사전협의 가능)

타. 인증 명판



파. 인증 수수료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 만원)

구 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이상	200만㎡~ 300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공원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250(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위비용 3%
	간접비	13	17	20	8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 3%
	교통비	0(120)	0(120)	0(120)	0(80)	
	계	309(429)	309(429)	309(429)	206(286)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원)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10,000㎡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 인 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 비 인 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19. 12. 31.)까지 1.25요율 적용
(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비 목	세부항목	본 인 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건비 (A)	서류 및 현장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1,000천원	224천원×1인×15일×0.2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500천원	(A) × 0.2
	교 통 비(C)	250천원	50천원×5인
	간접경비 (사후관리비 포함)	780천원	(A)×0.3
	합 계		4,030천원

비 목	세부항목	예 비 인 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건비 (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현장심사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330천원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180천원	(A) × 0.1
	교 통 비(C)		
	간접경비(D)	50천원	
	합 계		2,060천원
	비 고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지(소유자등)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증 연장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세별도

하. 인증 신청 및 문의

- (1)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57(홈페이지 : <https://bf.koddi.or.kr>)
- (2)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4549(홈페이지 : <http://lhi.lh.or.kr>)
-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31-728-7068(홈페이지 : <https://www.kead.or.kr>)
- (4)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 02-6973-9045(홈페이지 : <http://www.kpcqa.or.kr>)
- (5) 한국감정원 / 02-2187-4159(홈페이지 : <http://www.kab.co.kr>)
- (6)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070-8633-2083(홈페이지 : <http://www.kriea.re.kr>)
- (7)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02-3437-9083 (홈페이지 : <http://www.kisee.re.kr>)
- (8)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02-6911-4521(홈페이지 : <http://www.kbet.or.kr>)

※ BF인증제도 E-Book 게재(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E-book코너)

- 복지부 홈페이지(메인) '팝업존' <http://mw.go.kr/ebook/20150924/ecatalog301.html>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1 목 적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3 개 요

가. 발급대상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나.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 031-8008-6721)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 삼성화재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

다. 장애인보조견 종류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라. 발급절차



마.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 (1) 부과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2)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3) 과태료 부과금액 : 300만원 이하
 -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4-6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이하 “편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지회)

나. 사업기간 :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와 대안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 편의시설 적정설치 전문 및 인식개선 교육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시민축진단 운영 등)

라. 사업비 지원내역

- 보조율 및 금액
 - 매년 각 편의센터의 보조금 교부처에서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 및 보조금액 편성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6인 이상, 광역센터 각 4인 이상, 기초센터 각 3인 이상

- 사업비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 교육비 :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및 이해 촉진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집·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 기타 소요비용 : 편의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3 조직 및 인력

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중앙회에 중앙센터를 두며 각 시·도협회에 광역센터를 두고, 시·군·구지회에 기초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를 합하여 “지방센터”라 한다.

〈중앙센터〉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편의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편의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편의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지방센터〉

- 중앙센터의 기획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 각 해당 편의센터의 기획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각 직속상급센터) 등

나. 인력 구성

- 중앙센터 : 6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이상, 일반요원 3인 이상
- 광역센터 : 개소당 인력은 4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이상, 일반요원 2인 이상
- 기초센터 : 개소당 인력은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기초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1인 이상

※ 상기 인원구성의 원칙과는 별도의 국비·지방비 편성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음.

※ 중앙센터 및 광역센터는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편의센터의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장 또는 시·도협회장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건축관련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① 센터장 : 편의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② 선임요원 : 편의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③ 일반요원 : 편의센터의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의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각 편의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시설주관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및 관련단체(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와의 연계

- 시설주관기관이 건축 허가에 건축설계도면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편의센터에 의뢰한 경우 또는 사용승인시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의뢰한 경우, 편의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 또한, 편의센터는 관련단체(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교육·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

다.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중앙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라. 운영비 등

- 지방센터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보조율 및 금액으로 하되, 별도 지방비 및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중앙센터의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 또는 중앙센터에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급여기준표를 준용하여 지급함
 - 편의센터장의 전문기술적 업무수행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당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함
 - 동 지급기준 외에 별도로 매월 1인당 3만원의 편의시설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편의센터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제출

나. 지도·감독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편의센터 운영 및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편의센터는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각 보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의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편의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4-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나. 사업기간 :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진행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등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라. 사업비 지원내역

- 인건비
 - 5인(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사업비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연구비, 자료집 제작비, 홍보비 등
 - 교육비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증진과 양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소요비용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3 조직 및 인력

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센터를 두어 주요업무를 수행함

나. 인력 구성

- 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①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② 선임요원 : 센터의 사무운영 전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③ 일반요원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센터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보조금 등 회계관리

-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다. 운영비 등

- 센터의 운영비는 국비로 하되, 별도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지급 기준은 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함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예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센터장은 연간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

1 목적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시·도(시·군·구) 직접사업 또는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지회)

나.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다. 구 성

- (1)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관련 전문가(교수, 건축사 등) 등으로 구성된 핵심요원을 위촉
- (2) 시·군·구별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일반 직장인 등에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를 일반요원으로 위촉하되, 가급적 실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정

라. 주요 업무 기능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 시설주관기관(시·군·구 등)에 신고 및 의견 제시 등

마.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인건비 지급기준

- (대상 및 기준) 촉진단 요원은 핵심요원(1인), 전문요원(1인), 일반요원(2인) 등으로 하되 자치단체별 업무량 및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타 기관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원

감시원 명칭	위촉근거	운영목적	활동수당 등 지급	위촉기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	-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 위생 상태 계도	1일 5만원 (4시간 이상/ 연100일)	2년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부 운영지침	-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 경오염 감시기능 강화	-	3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동물보호법 제41조	- 동물 구조, 보호지원 - 동물 학대행위신고	1일 5만원 (4시간 이상/ 연50일)	3년
명예식물 감시원	식물방역법 제42조	- 식물검역 질서화 - 병해충방제에 대한 감시, 지도	1일 5만원 (4시간 이상/ 연30일)	3년

- 기타 촉진단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바. 중점 사업 방향 및 운영 방법

(1) 중점 사업 방향

- 관내 장애인 밀집 주거지역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무장애 공간 구현 추진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자 신고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77) <<http://www.koddi.or.kr>>
 - 한국지체장애인협회(02-2289-4343) <<http://www.atac.or.kr>>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02-799-1021)<<http://www.kbufac.or.kr>>
- 기타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독려 등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방향 설정·추진
- (2) 운영방법
- 동 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도별 2019년 세부 추진단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에 참여
 - 「장애인등 편의법」 및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관한 교육 참석
 - 간사 및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추진단 요원이 참석토록 하고, 추후 전달교육 등 수시 교육 및 편의시설 상담 요원으로 육성
 - 각 시·도내 지역별, 전문 분야별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여 편의시설 설치 추진활동 전개
 - 기타 추진단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서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실정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 시행

3 사업 관리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시민추진단 운영 및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추진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추진단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



2020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0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5-1 장애인차별금지법

1 목 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2 법적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3 차별의 정의 및 차별금지대상

가. 차별의 정의

-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 (4)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나. 차별금지대상

-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4 차별금지영역

가. 고 용

-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0조~12조 시행령 제5조~7조)
 -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나. 교 육

-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3조~14조, 시행령 제8조~10조)
 - 입학 거부·전학의 강요 금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수업·실험·실습·현장견학·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국·공·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 재화와 용역 서비스(법 제15조~19조, 시행령 제11조~13조)

- 재화와 용역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2) 정보통신·의사소통(법 제20조~23조, 시행령 제14조)

□ 편의제공 내용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수화통역사·보청기·휠체어 등 제공
 - 행사 7일전 요청하는 경우 지원(최대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방송제작물 접근 :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
- 통신설비 이용 중계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는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등 제공
 -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3.5.12부터
 -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4.5.12부터
- 인터넷 정보(홈페이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비전자정보 :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 제공(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제공)

- 도서자료 제공(국립중앙도서관) : 새로이 생산·배포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오·남용 방지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2009.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2010.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2013.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3.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등 ○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관련 사항) ○ 모든 법인
2015.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공연장·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 복지회관, 사립박물관·미술관(500㎡)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3) 문화·예술·체육 활동(법 제24~25조, 시행령 제15조~16조)

□ 편의제공 내용

○ 문화 예술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제공,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제공

○ 체육활동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성별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및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문화·예술·체육)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2010. 4. 11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3. 4. 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사립대학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 4. 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 시설, 지방문화원, 사립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시설)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25. 3. 20	○ 「관광진흥법」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2030. 3. 20	○ 관광사업 경영을 위해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관광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3조에 해당하는 여행업, 호텔업(1성급, 2성급, 3성급), 관광객 이용시설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6조~27조, 시행령 제17조)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보조인력 지원 등 제공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급·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과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급, 보조원 배치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행정·사법·선거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정당 및 후보자

마. 모·부성권, 성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8조~29조)

-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 임신·출산·양육·입양 등 모·부성권 보호
 -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됨
 - 교육책임자,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
- 성에서의 차별금지
 - 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표현, 향유할 자기결정권 존중

바.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0조~32조)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거주권 등 보장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박탈 금지
- 건강권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 제공
 - 선·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책 추진
- 괴롭힘 등의 금지
 -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예방

사.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3조~37조, 시행령 제18조~19조)

○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장애여성근로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 편의 제공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 직장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시 편의 제공

○ 장애아동

- 교육, 훈련, 건강보호·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 받을 기회 제공
-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강제 시설 수용, 무리한 재활치료 등 금지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실시

5 권리구제

가. 진정접수 및 시정권고 안내

- (1) 진정접수 : 차별 받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 (2) 진정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나. 과태료

- (1)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3) 부과금액 : 과태료(3천만원 이하)

(4) 권리 구제 절차



5-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운영

1 목 적

-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3 신고의무

가. 신고의무의 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나. 신고 대상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장애인학대의 유형 】

	유 형	내 용
1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2	정서적 학대	협박, 조롱, 따돌림 등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3	성적 학대	강제추행, 강간, 성희롱, 성매매 강요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4	경제적 착취	노동력 착취, 공적 급여(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나 편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5	유기·방임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거나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

다. 신고 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이메일)이나 수사기관(☎ 112)에 신고

라. 공무원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

-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직접 대응하거나 조사하기 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 요청(☎ 1644-8295)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련 요청에 적극 협조
 - 피해 장애인의 신분 확인, 주소, 장애인등록 관련 사항 확인 및 필요 서류 발급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동행, 사회복지시설 입소, 긴급복지지원 등 행정 지원

4 신고의무자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2)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점임교사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사회복지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5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의4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를 포함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kohi.or.kr)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과정'을 학습할 수 있음

7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번호(☎ 1644-8295)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장애인학대 신고스티커(예시) 】



8 장애인학대 신고인 보호

-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에 따라 처벌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금지되는 불이익조치	벌칙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³⁾ 준용
 -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3조(신변 안전조치)

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 목 적

-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별표 5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 별표 5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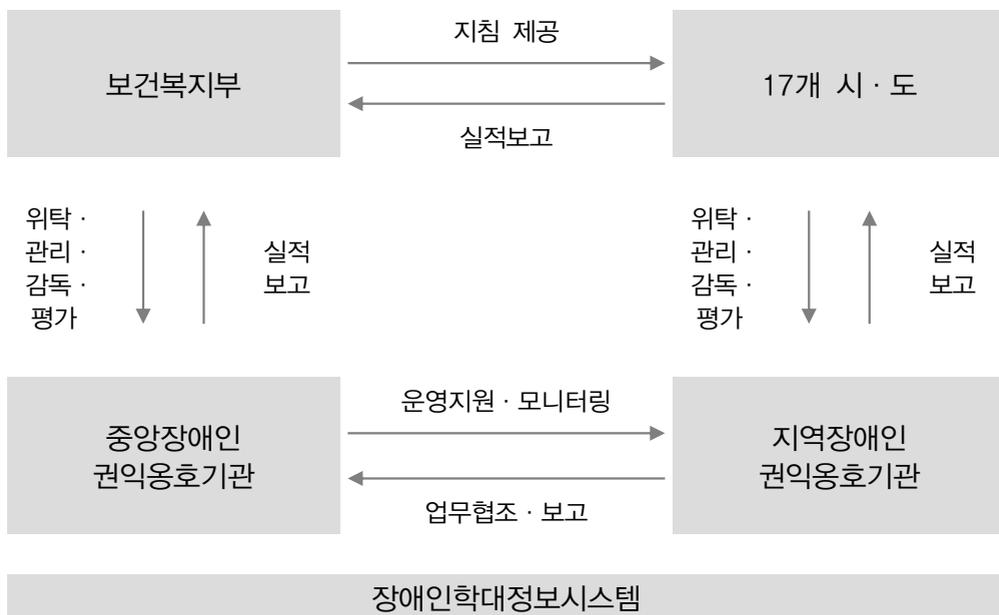
3 지원 대상

- 장애인학대 우려가 있는 장애인 및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의 가족 등
 - 미등록장애인도 신고접수, 현장조사 실시

4 운영 원칙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익옹호에 우선해야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5 추진 체계



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상담·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장애인학대 신고·현장조사·응급조치 현황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 월별 실적, 주요 활동(홍보, 교육 등), 주요 학대사례 보고
 - 사업계획서 공유 기타 요청에 따른 업무

7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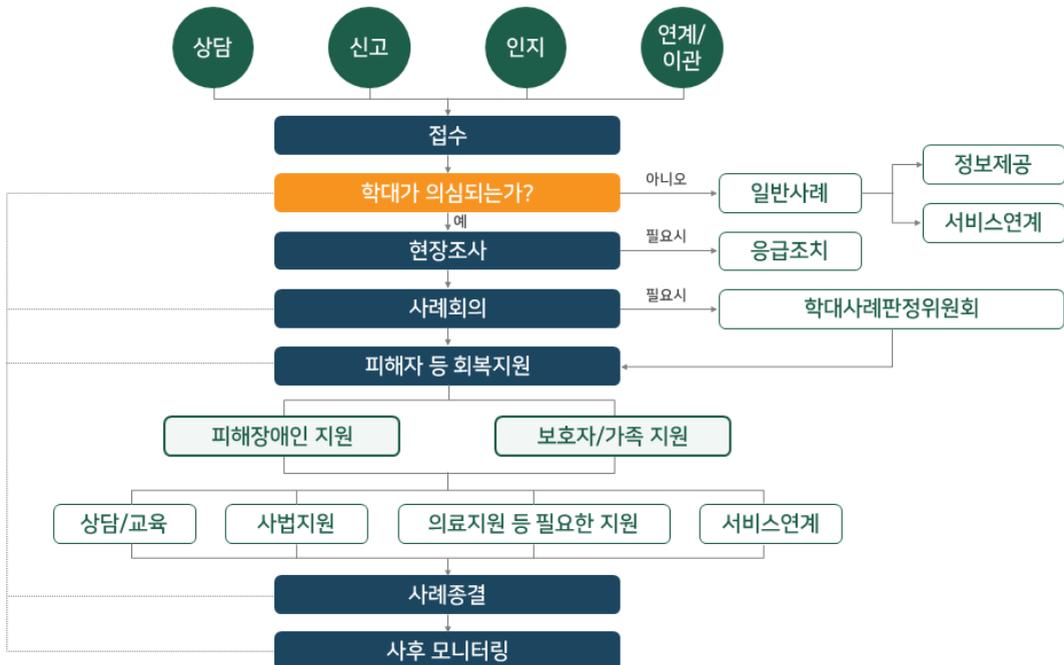
가. 사례지원의 개념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학대조사, 응급조치, 피해 회복 지원,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함

나. 지자체의 사례지원 협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련 요청에 적극 협조
 - 피해 장애인의 신분 확인, 주소, 장애인등록 관련 사항 확인 및 필요 서류 발급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동행, 사회복지시설 입소, 긴급복지 지원 등 행정 지원
 - 다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현장조사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업무 방해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다. 사례지원 체계도



라.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3의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
- 행정처분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마. 장애인학대 사건 등의 통보

-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장애인학대 사건 등의 통보 의무 부여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0.3.4]

8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현황, 명칭 등

가. 설치 현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1개, 지역 18개 기관 설치·운영(2020.1.1.기준)
- 경기도(북부)는 지방보조금으로 1개소 추가 설치·운영 개시(2019년부터)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18	1	1	1	1	1	1	1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2	1	1	1	1	1	1	1	1

나. 명칭 및 로고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은 ‘(시도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원칙으로 함

예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로고는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용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로고 디자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탁법인의 명칭을 부기하거나 수탁법인의 로고를 병기할 수 없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기관 이외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칭 사용 제한

다.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번호는 ☎ 1644-8295로 전국 공통으로 사용
 - 근무시간(09~18시)에 신고 접수,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도록 안내

9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가. 위탁 주체 및 수탁 가능 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설치·운영(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나. 위탁 과정

- (위탁기준 및 방식)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업무 수행실적·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기관·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 구체적인 위탁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시설 및 인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6에 따른 시설 확보 여부 혹은 확보 방안, 인력 확보 방안
 -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업무) 학대, 차별 등 장애인 인권침해의 예방 및 대응,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홍보·교육, 피해자지원, 제도개선 등 관련 업무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용 참조
 - (인권침해 여부) 최근 3년간 비리,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비위사실 적발이나 징계 여부,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포함) 사건 발생 여부 등 고려
 - (심사주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수탁기관 선정단’을 두고, 선정단에서 심사
 - (수탁기관선정단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한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구성
 - ①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장애인 복지·인권 관련 전문가



- ③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장애당사자 또는 그 부모
- (수탁기관선정단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자체는 선정단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의 업무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 시·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체결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서’와 위탁 시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다. 위탁 기간 및 갱신

- (위탁 기간)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함
- (위탁 갱신) 재 위탁 평가를 통하여 위탁 갱신 여부 결정. 재 위탁 평가 시에도 수탁기관선정단을 통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 이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업무 수행실적·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기관·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음

라. 위탁 해지

- 시·도지사는 위탁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법령(규정),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위탁을 해지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해야 할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1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

가. 시설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에 따른 시설 기준(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을 충족, 단 교육실은 공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부 설치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2)

1. 사무실

- 가.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사무실은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공간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 가. 상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나. 상담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을 상담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추고 이를 비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라. 상담실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실

- 가. 5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4. 대기실

- 가. 9.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가족 등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 수어통역사 등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대기실은 아동이나 노인 등 이용자의 연령대와 장애를 고려하여 편안한 구조와 분위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 접근성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
- 간접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
- 기자재, 비품 등의 소유권, 최종 관리책임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위탁 해제 및 수탁기관 변경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으로 구입된 기자재,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함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유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최종 관리책임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위탁 해지 및 수탁기관 변경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전부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는 폐기하여야 함

나. 조직 및 채용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정과 업무 수행에 적합한 형태로 조직 구성
- 사업계획서상의 인력 운영안 확정 이후, 인력변경으로 인한 채용과정에서 지자체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 수행인력 채용이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

다.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9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변호사
-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구체적인 자격요건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구분	자격 요건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u>이 있으며</u>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u>이 있으며</u>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u>이 있으며</u>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u>이 있으며</u>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사원 (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u>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사원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u>경력자 우대</u>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라. 근무

- 기관장 및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근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휴가 등 구체적인 근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함

마. 보수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을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1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

가. 사업실적 보고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실적 현황을 분기별(해당 분기의 종료 다음 월(月)의 말일까지)로 연 4회 시·도지사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보고서를 반기별(상반기·하반기의 종료 다음 월(月)의 말일까지)로 보건복지부에 제출

나. 평 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평가대상 기간은 다음 연도 1.1.~12.31.임)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평가 실시
- 평가 주요 내용
 - ① 사업 추진실적, ② 조직·인력·예산 운영실적, ③ 그 외 타 기관과의 협력실적 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역할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 ④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 평가 방법
 - 복지부·지자체 담당자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서면심사 진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평가단이 정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분기별 사업실적, 복지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등)를 양식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
-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게 포상 진행
 -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재 위탁 평가에 반영

12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보조 및 행정사항

가. 예산 지원

- 기준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 지자체 예산으로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예산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방향 수립 자문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를 통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확보·지원

나.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 예산의 집행 책임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시·도지사는 감독 책임)
- 수탁기관 예산배정
 - 배정요청(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매분기 시작 15일 이전 예산사용계획서와 함께 제출
 - 예산배정(시·도지사): 배정 요청된 예산을 매분기 시작 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지급
- 보조금 배정 방법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위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운영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집행
 - 회계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의무 사용

- 집행방법은 [별표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

○ 회계기록의 작성 및 보관

- 보관 : 예산계획서 및 정산서, 회계장부, 재무회계 관련 공문(5년 보관)
※ 민간위탁의 경우도 자금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예산항목별 집행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참조하여 국고보조금 보조세목(표준화)에 준하여 작성
※ 참조: [별표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반적인 관행에 의거 집행하되, 집행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라. 정산보고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집행적정성 여부와 집행실적을 검토하고, 최종 정산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마. 예산전용

- 예산 전용 기준
 - 예산 전용(관, 항간 전용)의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전용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은 시·도와 협의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전용 가능하고, 전용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서식 1-2호] 사업계획서

2020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계획서

보 조 사 업 명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보 조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개월)						
종 사 자 현 황	총 정원(명), 현원(명)						
사 업 책 임 자	성명		직위				
	전화		전자우편				
	Fax		홈페이지				
<p>위와 같이 20 년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p> <p>기관장 서 명 (인)</p>							
시·도지사 귀하(지자체명)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전화 , 전자우편)							

요 약 문

보 조 사 업 명	
사 업 책 임 기 관	
총 사업기간	20 ~ 20 (개월)
사 업 내 용 요약	

사업운영 세부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필요성에 대해 기술

2. 사업 내용

가. 사업의 목표

*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에 대하여 기술

나. 사업 대상

* 사업대상의 현황 및 특성 분석, 사업 대상 선정 근거 및 방법 등 기술

다. 세부사업 계획 및 추진방법

*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①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②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④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⑦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성과목표 달성하기 위한 활동 및 성과관리 방안(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전략 등)을 자세히 기술

세부사업 내용	성과관리방안				
	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근거자료	수집방법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의 표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

- 성과 : 여러 활동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 성과지표 :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 목표치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 달성도 : 목표수준을 100% 하였을 경우 실제 달성한 정도는?
 - 근거자료 :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 * 권리구제 사업 및 현장 조사 성과목표는 행위기준으로 작성 (건/명)

라. 추진 일정 및 사업 수행 인력

① 사업추진 일정표

사업내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② 사업 수행인력

구분	성명	직급	전공 및 학위			보유자격 (급수)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분야 근무기간 (개월)
			전공분야	학위명	취득 연도		
1		관장					
2		팀장					
3							
4							

※ 구분: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 신규인력 등으로 구분

※ 근무기간: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을 표시

마.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예산 내용

가. 사업비 총액 및 재원조달

구 분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금액							
백분율							

※ 기타 : 제3자 기부 또는 협찬금, 수익자 부담금 등 표기

나. 세부예산

※ 예산 내역 구분(관·항·목)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별표 2)에 따라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항목(보조비목 및 세목)에 대한 확인 및 항목 중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사용

관	항(보조비목)	목(보조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비율	
사 무 비	인건비	보수(01)				
		기타직보수(02)				
		상용임금(03)				
		일용임금(04)				
		기타인건비(05)				
	운영비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 및 제세(02)				
		피복비(03)				
		특근매식비(05)				
		일·숙직비(06)				
		임차료(07)				
		연료비(08)				
		시설장비유지비(09)				

관	항(보조비목)	목(보조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비율
		차량비(10)			
		재료비(11)			
		복리후생비(12)			
		위탁사업비(15)			
		기타운영비(16)			
	여비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01)			
		기관업무비(02)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01)			
		월정직책급(02)			
	재산 조성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01)		
무형자산		법률상의권리(00)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01)			
사업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00)			

[서식 1-3호] 분기별 실적보고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분기 실적보고서

I. 사업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척율(%)
○	○	○	
○	○	○	
○	○	○	
·	·	·	
·	·	·	
·	·	·	

※ 세부추진계획(항목) 및 추진일정은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함

※ 추진실적은 현재까지의 실적 및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 종합진척율(%)은 전체 계획에 대한 진행율을 종합 판단하여 기재함

II. 보조금 예산집행

※ 세부예산 내역에 맞게 항목(보조비목 및 세목) 조정

관	항(보조비목)	기집행 실적	계획	집행	집행잔액	다음분기 집행계획
	합 계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Ⅲ. 사업별 자체평가

* 평가대상 세부사업

- ①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②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④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⑦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Ⅳ.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건의)

☞ I, II, III, IV 각 자료는 분량에 제한 없이 작성

[서식 1-4호] 총괄 사업실적보고서

2020년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실적보고서

보 조 사 업 명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보 조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개월)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1쪽 이내로 작성

I. 사업추진 방법

1.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실제사업주체(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후원단체 등)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숍, 컨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계획대비 이행여부 (준수, 미준수)
○월			

○ 미준수 사유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기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Ⅲ. 사업추진성과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 세부사업별로 기술

- ①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②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④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⑦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사례중심, 구체적으로 기술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평가대상 세부사업

- ①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②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④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⑦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V. 보조금 예산집행

관	항(보조비목)	총사업비 (국비,지방비,자부담 구분)	계획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 세부예산 내역에 맞게 항목(보조비목 및 세목) 조정

VI. 개선·건의사항

[서식 1-6호] 유형자산(비품) 관리 대장

비 품 관 리 대 장

구입연도	결재자	물품명	물품번호	규격 및 단가	수량	비고

[별표 1] 예산집행기준

항 목	기 준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회,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수행인력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자문회의	○ 수 당	1시간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	
	○ 경 비	1인당	:	20,000원 이내		
	토론회· 공청회	○ 수 당	최초 1시간	:	200,000원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2시간	:	300,000원	
			2시간 초과	:	400,000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최초 1시간	:	100,000원		
		2시간	:	150,000원		
		2시간 초과	:	200,000원		
	○ 경 비	1인당	:	20,000원 이내		
여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계상 					
	구 분	숙박비 (원)	일비 등(원)			비 고
			일비	식비	운임	
	기관장	실비	20,000	25,000	실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팀장/팀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20,000	20,000	실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교통비: 4시간이내 1명 1일당 10,000원/4시간이상 1명 1일당 20,000원 						

* 예산 집행 기준은 광역지자체 사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별표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총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과의사, 공중방역수 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과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자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감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광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화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금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사이정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보전금 (310)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약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민간 이전 (320)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 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 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 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 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축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용자금 (450)	용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용자해주는 용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용자 해주는 용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용자금 4. 기타 용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등 (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의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서식 2-1호] 장애인학대 사건보고 양식

○○○ 사건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00.00.)

◆ 주요내용

사건 개요

○ (학대 상황)

—

*

○ (발견 정황)

현황 및 향후계획

○ (가해자 처벌)

—

*

○ (피해자 지원)

[서식 2-2호] 신분증

(앞 쪽)	(뒤 쪽)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8px;">지자체 로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 호</p> <h2 style="margin: 0;">신분증</h2>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성 명</p> <p>〇〇〇〇장애인권익옹호기관</p> </div>	<h2 style="margin: 0;">신분증</h2> <p>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p> <p>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〇〇〇〇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장애인권익옹호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000)000-0000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55mm×85mm[백상지 120g/㎡]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별로 해당 지자체 로고 사용



5-4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1 목적

-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별표 5의4

3 설치 및 운영 기준

- 피해장애인 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에 따름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4)

1. 시설기준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 가. 배치기준: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 나.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시설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운영기준

가. 입소정원: 8명

나. 운영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다.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운영방침
- 2)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 3) 입소자의 처우요령
- 4) 입소·이용 규정
- 5) 입소자의 생활수칙
- 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
-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 1) 직원 관계철
- 2) 회의록철
- 3) 사업일지
- 4) 문서철
- 5) 문서 접수·발송대장
- 6) 차량 운행일지
- 7)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 1) 입소자 관계 서류(상담기록카드, 입소자 카드 등)
- 2)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3)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1)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 3) 예산서 및 결산서
- 4) 비품 출납대장
- 5) 비품 관리대장
-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기능

가. 임시 보호

- 피해장애인의 긴급 분리를 통한 2차적 피해 예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의료지원 연계

* 생활지원은 쉼터생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 지원을 말함

나. 상담 지원

-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심리안정 조치)

* 전문상담 또는 심리치료 등은 쉼터 내부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유관기관과의 연계)

다. 사회복귀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
-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라. 기타

- 해당 쉼터 입소자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영 가능

5 입·퇴소 절차

가. 입소 절차

- 입소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입소절차

- 시·도, 시·군·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입소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쉼터 입소의 필요성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
 - * 신규 입소자는 기존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검진(입소 후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
 - * 입소 의뢰기관은 쉼터 입소 기간에 맞는 지원 및 퇴소 이후 계획을 마련하고 쉼터와 공유해야 함
- 긴급한 경우, 사전 입소(심야, 주간) 한 뒤 입소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가능
-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입소기간

- 피해장애인의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시·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나. 퇴소

○ 퇴소 사유

- 입소목적의 달성 및 입소기간 만료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 입소자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자 퇴소 관련하여 쉼터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등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퇴소조치 함
- 타 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 * 입소자의 심신의 건강악화 또는 학대 피해에 따른 치료 등을 위해 의료시설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 * 이 경우 입소자의 정보, 제공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력 등의 정보 공유

○ 퇴소 이후 사례관리

- 시·도에서는 퇴소하는 장애인의 다른 사회복지시설 연계 또는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함
- 퇴소하는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퇴소 정보 통보

○ 퇴소절차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퇴소

6 설치 현황

-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명칭, 위치, 연락처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운영	13	1	1	1	1	1	2	1	1	1	1	1	1

7 운영상의 주의사항

- 피해장애인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외부인 특히 장애인학대 행위자 및 행위자와 관련된 사람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피해장애인과 단독으로 만나지 않도록 함
- 방문목적과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장애인과 접촉을 함부로 허가하여서는 안 됨
- 피해장애인의 신원, 입소 여부, 입소 현황 등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됨



2020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06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 목 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대상민원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기요금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저소득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도 함께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가.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앞서 당해 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민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준다.

- 신규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민원신청을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대행한다.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단, 도시가스요금 감면 서비스는 종전의 방식으로 대행처리 하도록 한다.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제도에 관해 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다.

【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

신청구분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건강보험증(사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	최근 통신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 영수증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는 공부로 확인

나. 민원인(장애인)에게 대행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징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책의 실시(주관)기관과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규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행한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신청 및 차량 취득시 수요가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면제 및 공채구입의무 면제신청 등은 신청대행업무에서 제외한 바, 신청을 대행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책의 내용 및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을 안내한다.

다. 별지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 시행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부한다.

※ 행복e음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별지서식을 작성·송부토록 한다.

- 처리지연 또는 구비서류 징구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접수일이 월말이어서 읍·면·동에서 민원을 대행하면 요금 감면 개시월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시책 시행 기관】

시책명	시행기관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기요금 감면 신청	관할 한전지사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유선전화요금: 관할 전화국 · 이동통신요금 - KT(☎1588- 0010) - SK텔레콤(☎1566-0011) - LGU+(☎1544 -0010)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영업소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세무과

4 시·청각장애인가정 전입시 TV수신료 면제 신청

- TV수신료를 면제받던 시·청각장애인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TV수신료 면제신청을 대행하여 당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계속되고, 장애인이 종전에 살던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가 중단되도록 조치한다.

5 사후관리

- 전화국 등 각종 시책 실시기관에서 신청사항의 확인 또는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FAX번호()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등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시 귀 공단의 정관규정에 의한 경감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세대주 명	주소	건강보험증 번호	장 애 인 인 적 사 항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장애종류 및 등급	최 초 등록일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전화국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화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애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비 고

첨 부 1.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접 수 중

○ ○ ○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아래 민원이 우리 동(읍·면)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접수되었으며, 동 신청서는 각각 해당기관에 발송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200

○ ○ 읍·면·동장 (인)

————— 〈 안 내 사 항 〉 —————

- 위의 민원은 각각 해당시책의 시행기관으로 송부되어 처리되므로 소정기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아래 기관을 방문·신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요금 감면: 관할 전화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시·군·구청의 세무과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은 발급신청서의 전산화 작업 및 시·도 경유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그 발급에 약 30여일이 소요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별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뒷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또는 자녀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지체·뇌병변·심장·신장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욕창방지용매트가 필요한 1, 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1~3급 장애인으로서 중고생 자녀가 있거나, 또는 1~3급 장애인인 중고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장애인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이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고 의료비 감면을 받습니다.
-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3급장애이용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시 채권구입의무 면제,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 허용,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등은 일괄처리 대상 민원이 아니오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발 행 일 2020년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F A X 044-202-3960